

목 차



초등(초등·특수·사서·상담 교사)

제 1 장 총칙	5
제 2 장 신규 교사 및 계약제 교원 임용	7
제 3 장 교사·교감 전보	7
제 4 장 교육실습 협력학교 전입	13
제 5 장 수석교사 전보	14
부 칙	22

유치원(유치원·보건 교사)

제 1 장 총칙	37
제 2 장 신규 교원 배치 및 계약제 교원 임용	39
제 3 장 유치원 교사·원감 전보	39
제 4 장 수석교사 전보	44
부 칙	50

유치원(특수교사)

제 1 장 총칙	63
제 2 장 신규 교원 배치 및 계약제 교원 임용	64
제 3 장 전보	65
부 칙	72



목 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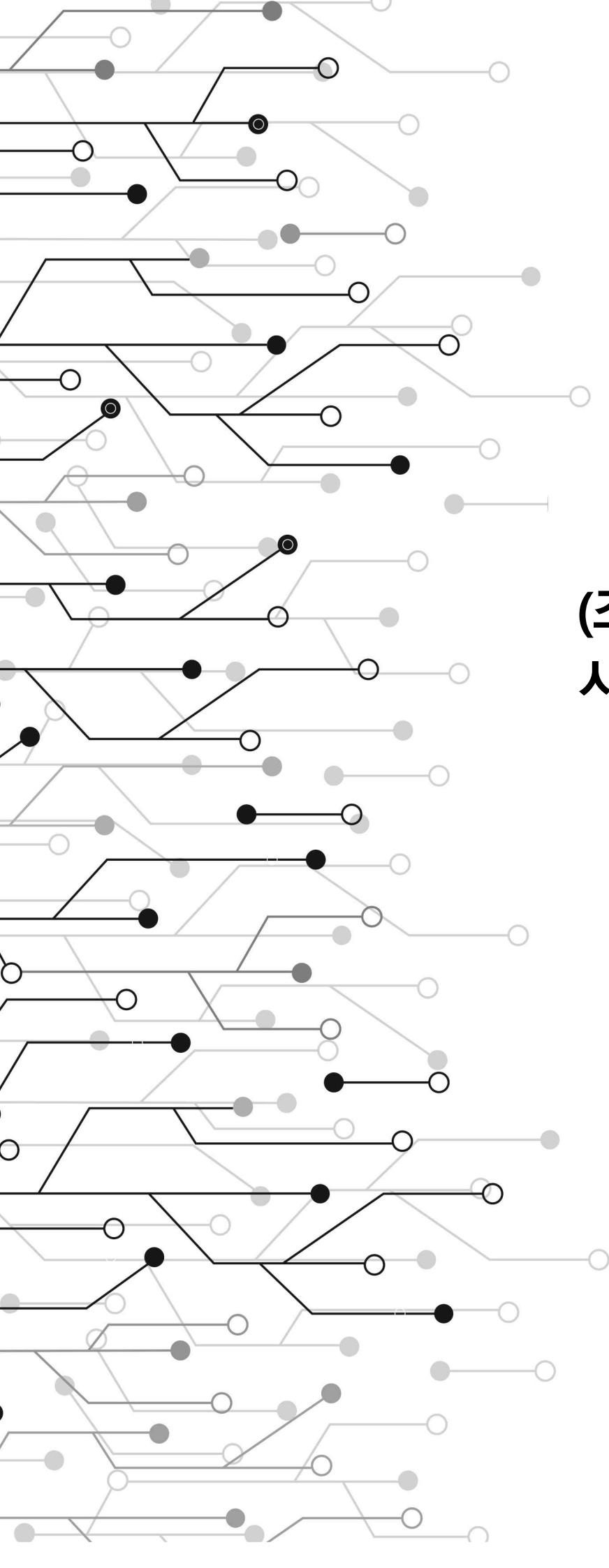
초등(보건교사)

제 1 장 총칙	75
제 2 장 신규 교사 및 계약제 교원 임용	76
제 3 장 보건교사 전보	76
부 칙	83

초·중등(영양교사)

제 1 장 총칙	91
제 2 장 신규 영양교사의 배정과 임용	93
제 3 장 영양교사 전보	94
부 칙	100





2026학년도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기준

초등

(초등·특수 교사 사서·상담 교사)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교육공무원 인사 관계 제 법규 및 본도 인사관리기준에 의한 초등학교 교원의 신규 임용, 전보 등에 관한 세부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경상남도양산교육지원청 초등학교 교사(수석·특수·사서·상담교사 포함)와 교감에 적용한다. <개정 2022.8.17.>

제3조(전보의 시기)

정기 전보는 3월 1일과 9월 1일에 실시한다. 다만, 수석교사, 교사는 3월 1일에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비정기 전보)

① 수석교사, 교사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동일 직위 최저 근무연한 이내 일지라도 전보할 수 있다. 단 제5호, 제6호, 제7호, 제8호는 전보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제8호는 본인이 요청할 경우, 인사권자 소속 인사위원회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소명할 기회를 부여하며, 제9호는 본인의 희망과 전보권자의 승인에 의하고, 제3호 해당자로 전보된 자는 2년 이내 전 근무지에 가급적 전보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8.16.> <개정 2019.8.13.> <개정 2022.8.17.>

- | | |
|--|---------------------|
| 1. 정원의 변경, 승진, 강임의 경우, | 2. 직위해제 후 복직된 자 |
| 3. 징계처분을 받은 자, | 4. 감사 결과 인사조치 지시된 자 |
| 5. 당해학교 재직 시 3회 이상 징계에 이르지 않는 주의 또는 경고 처분을 받은 자 | |
| 6.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 성적이 저조한 자. 단, 이 경우 학교장은 전보 요청 전에 당해 교원의 능력개발을 위한 직무연수를 부과하여야 한다. | |
| 7.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 3 제1항 각호의 사유와 관련하여 징계에 이르지 않는 주의 또는 경고 처분을 받은 자 | |
| 8. 기타 인사 쇄신 상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 | |
| 9. 교권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 |



- 10. 동일교에 근무하는 직계 존·비속 및 부부 교직원 <개정 2022.8.17.>
- 11. 신체,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 요양을 필요로 하는 자

② 교감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동일 직위 최저 근무연한 이내일지라도 전보할 수 있다. 단, 제10호는 본인의 희망에 의한다. <개정 2022.8.17.>

- 1. 직위해제 후 복직된 자
- 2. 징계처분을 받은 자
- 3. 행정 처분으로 인사조치가 결정된 자
- 4. 당해학교 재직 시 3회 이상 징계에 이르지 않는 주의 또는 경고 처분을 받은 자
- 5.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 성적이 저조한 자
- 6. 학교경영이 부실하거나 중대한 민원을 야기한 자
- 7. 기타 교육상 전보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자
- 8.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 3 제1항 각호의 사유와 관련하여 징계에 이르지 않는 주의 또는 경고 처분을 받은 자
- 9. 신체,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 요양을 필요로 하는 자
- 10. 교권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 ③ ①항 제2호~제8호 해당자와 ②항 제1호~제8호에 해당하는 자는 비경합지로 전보한다.
- ④ 학교장은 학교 운영상 전보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직권 내신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충분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비경합지에 내신하여야 한다.

제5조(인사 구역 및 근속 연한)

동일교 장기 근무로 인한 침체 방지와 생활근거지 및 희망지 전보로 교직의 안정을 기하기 위하여 <표 1>과 같이 인사 구역 및 동일교 근속 연한을 정하여 순환 전보를 실시한다.

제6조(전보 연한 계산과 경력 및 가산점 평정)

전보 연한 계산과 경력 및 가산점 평정은 2월 말일, 8월 말일 현재로 하며, 전보 연한의 계산에서 1월 미만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 2 장 신규 교사 및 계약제 교원 임용

제7조(신규 교사 임용)

- ① 신규 교사는 교육감이 배정한 자를 교육장이 임용한다.
- ② 신규로 임용되는 교사의 일정 인원을 『가』 급지 또는 희망자에 우선 배치할 수 있다.

제8조(계약제 교원 임용)

- ① 초등학교 계약제 교원은 초등학교 교원 자격증 소지자를 학교장이 임용한다. 단, 초등 학교 교원 자격증 소지자가 없을 경우에는 중등 교원 자격증 소지자를 임용할 수 있다.
- ② 특수학교 계약제 교원은 특수학교 교원 자격증 소지자를 학교장이 임용한다. 단, 희망자가 없을 경우 그 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자 또는 다른 급 교원 자격증 소지자를 임용할 수 있다.

제 3 장 교사·교감 전보

제9조(인사 구역 및 근속 연한)

- ① <삭제> <2024.3.1.자 전보부터 삭제 2022.8.17.>
- ② 벽지학교에서 2년 또는 준벽지학교에서 4년을 근속한 자는 (준)벽지를 제외한 학교로 전보한다. 단, 벽지학교 또는 준벽지학교로 재전입을 원하는 경우는 전보 후 5년이 경과되어야 한다.(삭제) (2026.3.1. 전보부터 시행) <개정 2018.8.13.> <개정 2022.8.17.> <개정 2024.8.12.>
- ③ 휴직 기간 및 파견근무 기간은 근무 기간에서 제외한다. 단, 공상 휴직의 경우는 근무 기간에 포함하며, 도 단위 교육행정, 연구, 연수, 수련기관 파견 근무자의 파견 기간은 당해학교 근무 경력으로 산입할 수 있다. <개정 2016.8.16.> <개정 2017.8.21.> <개정 2018.8.13.>
- ④ 정원의 변경으로 부득이 전보된 자는 전임교 근무 경력을 현임교(동일교)의 근속 경력으로 볼 수 있다.



⑤ 9월 1일 신설학교 개교로 3월 1일 임시배치교에 임용된 교사의 당해연도 임시배치교의 경력은 근속연한에 포함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25.8.12.>

제10조(정기 및 희망전보, 전보유예)

- ① 학교 간의 전보는 <표 1>과 같이하되, 교사, 교감의 동일 학교 근무 기간은 1년 이상 5년의 범위 내에서 동일 직위에 근무한 자(타 시·도 파견 전입교사 포함)를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단, 교육실습 협력학교 근속기간 4년을 초과할 경우, 현 근무지 경력 및 가산점으로 만기전보를 실시한다. <신설 2024.8.12.>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본인의 희망과 소속 학교장의 요청에 따라 ‘1회에 한하여’ 전보권자가 1년간 유예할 수 있으나 6호에 해당하는 자는 2회까지 유예할 수 있다. 단, (준)벽지학교는 제외(**8호는 예외**)하며, 각 호에 대하여 중복할 수 없다. <개정 2016.8.16.> <신설 2018.8.13.> <개정 2019.8.13.> <개정 2020.8.14.> <개정 2025.8.12.>

1. 도 지정 이상의 연구·실험·시범학교 근무자로서 연구가 완료되지 아니한 학교의 교원 중 교감, 업무 주무 교사
2. 정년퇴임 1년 이내인 교감, 교사
3. 특수학급 담당 교사(단, 특수교사 자격증 소지자로서 전보 희망자가 없을 경우에 한함)
4. 학교경영 상 꼭 필요한 특수영역의 우수 교사
5. 전국소년체육대회 금메달 획득 지도교사 및 전국소년체전 단체종목 우승학교 교감
6. 행복(나눔)학교 운영상 꼭 필요한 핵심 교사(2명 이내) <개정 2016.8.16.>
7. 다자녀 교원(3자녀 이상) 중 미취학 아동이 있는 교감, 교사 <신설 2018.8.13.>
8. **교육전문직 선발 공개전형 최종 합격 후 임용 발령을 받지 아니한 교사 <신설 2025.8.12.>**

- ③ 익년도에 도 인사 구역 급지 간 순환 전보 대상자는 학년도 도중에 관내 전보할 수 없다.
- ④ 특수학급이 설치되어 있는 학교에 결원이 생길 경우, 특수교사 자격자를 우선 전보함을 원칙으로 하되, 특수교사 자격 유무자의 배치 비율 등을 고려하여 전보한다.
- ⑤ 사서, 상담교사의 전보는 학교 규모, 교육여건, 해당 교사의 희망 등을 고려하여 전보한다. 단, 동일교 근무연한 만기자의 전보 시 전보 희망자가 없을



경우에는 본인의 희망과 학교장의 요청에 의하여 전보권자가 1년간 유예할 수 있다. <개정 2017.8.21.> <개정 2023.8.21.>

- ⑥ 파견근무 확정자는 전보하지 아니한다. 다만, 만기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5.7.22.> <개정 2017.8.21.>

<표 1>

2025. 인사 구역 및 동일교 근속 연한

인사 구역		해 당 학 교	학교 수	동일교 근속 연한	
구분	급지			교감	교사
동 지 역	가		0		
	나	대운, 덕계, 삽량, 신양, 양주, 중부, 평산, 회야	8		
	다	북정, 삼성, 신기, 신명, 양산, 응상, 천성	7		
	라	백동, 서창, 어곡	3		
읍 · 면 지 역	가	가남, 가양, 가촌, 금오, 석산, 성산, 신주, 증산 황산	9	4년 (수석 교사 포함)	5년 (수석 교사 포함)
	나	동면, 동산, 물금, 서남, 오봉, 사송	6		
	다	금송 , 범어, 상북, 소토, 영천	5		
	라	용연, 하북, 화제, 특수교육지원센터, 위센터 <개정 2019.12.27.>	5		
	나	원동(준벽지) 좌삼(준벽지) (2019.3.1.부터) <개정 2018.8.13.>	2	3년	5년
		원동초이천분교장(벽지)	1		2년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삭제> <2024.3.1.자 전보부터 삭제 2022.8.17.> ○ 본 기준 시행 이전의 학교 급지는 급지 조정 이전의 기준에 의한다. ○ 교감의 동일교 근속 연한 <개정 2020.8.14.> ○ 교육실습 협력학교 근무 기간은 근속기간 4년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23.8.21.> <개정 2024.8.12.> ○ 교사 준벽지 동일교 근속 연한 5년 (2026.3.1. 전입자부터 시행) <개정 2024.8.12.> <개정 2025.8.12.> 				

- ⑦ 교육활동 침해 피해 교원의 경우 침해 학생이 전학한 학교에 전보하지 않는다(단, 피해 교원이 ‘동일교 미배치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한다.). <신설 2021.8.13.> <개정 2022.8.17.>

- ⑧ 직계 존·비속 및 부부 교직원이 근무하는 학교에는 해당 교직원이 근속



연한 만기전보 대상자가 아닐 경우 전보 희망을 할 수 없다. <신설 2025.8.12.>

제11조(전보서열 명부 작성)

- ① 교사의 학교 간 전보에서 경합이 있을 경우에는 경력점, 가산점을 합산하여 전입 교별로 남·여 통합하여 전보 서열명부를 작성한다. <개정 2017.8.21.>
- ② 경력점은 최근 4년간의 근무 기간 중 <표 1>의 급지에 의거 다음의 <표 2>와 같이 산출하되 현임교 이전의 경력은 『가』 급지로 간주한다.

1. 근무 기간 중 휴직 기간 및 파견 기간은 제외한다. 단, 공상 휴직의 경우는 근무 기간에 포함한다.
※ 휴직 기간 또는 파견 기간이 경력점 평정 기간 내에 있는 경우, 당해 평정 기간 직전의 실제 근무 기간에서 이월하여 당해 평정 기간에 산입한다. 단, 도 단위 교육행정, 연구, 연수, 수련기관 파견 근무자의 파견 기간은 당해학교 근무 경력으로 산입할 수 있다.
2. 타 시.도 및 타 시.군 전입자의 전입지 인사 구역 급지 경력점은 본 시의 『가』 급지에 준하고 초과 경력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3. 경력점의 경력계산은 학년도 기준으로 하되, 1년 미만은 월 단위로 계산하고 15일 이상은 1월로 한다.
4. 양산교육지원청 위센터 또는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근무한 기간은 근속 연한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표 2>

1년간 경력점 산출표

경력점	급지	가	나	다	라
1년간	6	7	8	9	
1년간(2018.3.1. 이후의 실적부터)	7.5	8	8.5	9	

- ③ 가산점은 <표 5>에 의거 최근 4년간 현임교에서 거양한 실적과 표창에 한하여 우우 조건을 포함한다. 단, 휴직 기간 또는 파견 기간이 평정 기간 내에 있는 경우, 당해 평정 기간 직전의 실제 근무 기간에서 이월하여 당해 평정에 산입한다(휴직 기간, 파견 기간 삽입은 2015.3.1. 이후 실적, 도서벽지학교와 준벽지학교 전보 희망자는 제외). <개정 2014.11.27.>
<표 5>에 의한 가산점 평정표 중 근무실적의 경력계산은 학년도 기준으로 하되 ‘1년마다’로 명시되어 있는 항목의 가산점 평정 시 6개월 이상은 1년으로 하고, 6개월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단, 교육청 이상 연구(시범·실험)학교 지정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는 월마다 0.1점을 인정한다(2015.3.1. 이후 교육청 연구(시범·실험)학교 지정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 매월 0.050). <개정 2014.11.27., 2017.8.21.>

정보화 관련 자격 및 **영어능력시험** 자격은 취득시기와 관계없이 인정하며(삭제) (2024.3.1. 전보부터 적용) <개정 2021.8.13.> <개정 2025.8.12.>, 수업명사 자격은 취득 후 10년간 가산점을 부여한다. 수업명사 자격 관련 개정 내용은 2016.3.1. 이후 적용한다. <개정 2015.7.22.> 근무실적 2, 3, 4, 5, 6, 8, 9, 10, 15, 17항은 6개월마다 가산점을 부여한다. <개정 2020.8.14.> 근무실적 11, 12호 및 연구실적 1호의 전국 규모 대회는 경남교육청 추천대회에 한한다. <개정 2022.8.17.>

- ④ 전보서열 명부 작성에 있어서 동점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선 순위자를 결정한다. <개정 2017.8.21.>

1. 현임교 장기 근무자, 2. 경력점 상위자, 3. 생년월일 선 순위자

- ⑤ 전보 전형 조서의 효력은 정기 전보 시기로 한정하며 전보 포기 희망자는 명부에서 삭제할 수 있다. 단, 정원 조정 등으로 인하여 하급지로 전보된 자는 제외한다.
- ⑥ 벽지학교(분교장 포함) 및 준벽지학교 전입 희망자는 통합서열명부를 작성하여 시행한다. <개정 2017.8.21.>

제12조(전보)

- ① 교사의 전보는 전보서열 명부에 의거, 선 순위 순으로 전보한다. <개정 2022.8.17.>
- ② 교감의 전보는 학교장의 제청을 받아 직무수행능력과 학교 운영 실적 및 지도력 등을 감안하여 적재적소에 전보한다(전보서열 명부 작성 예외).

제13조(전입자 배치)

- ① 전입교사는 다음의 원칙에 의거 배치한다.

1. 전입 서열에 따라 가급적 희망 지역으로 배치한다.
2. 희망 지역 내에서의 배치는 <표 3>에 의거 학교 선호 순위별로 하며 생활근거지, 부부 교원 여부, 연령 등을 고려하여 조정, 배치할 수 있다. <개정 2024.8.12.>

- ② 전입 교감의 배치는 직무수행능력을 감안하여 적재적소에 배치한다.



<표 3>

전입교사 희망 **권역별** 학교 현황표

<개정 2024.8.12.> <개정 2025.8.12.>

지역별 급지별	중부권역	서부권역	동부권역
가 급지	금오, 석산	가남, 가양, 가촌, 정잔 신주, 증산, 황산	
나 급지	동산, 삼랑, 신양 양주, 중부, 좌삼	물금, 서남, 원동, 이천분교	대운, 덕계, 동면 사종, 평산, 회야
다 급지	북정, 삼성, 상북 소토, 신기, 양산	범어, 오봉	금송, 신명, 영천 웅상, 천성
라 급지	어곡, 용연, 하북	화제, 위센터 특수교육지원센터	백동, 서창
계	17	14(2)	13

제14조(교사 초빙)

- ① 초빙교사 임용은 당해 학교 교사 총 정원의 20% 이내(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5조에 따른 학교의 경우 40% 이내)로 한다(단 도서벽지학교, 준벽지학교는 제외하고, 교장공모제 학교는 운영 지침에 따른다). <개정 2021.8.13.>
- ② 위 사항 이외의 초빙교사 임용에 관한 세부 사항은 당해 학년도 경상남도교육청의 초빙교사 임용 업무 처리 요령에 따른다. <개정 2015.7.22.>

제15조(전보 우선)

- ①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는 학교장의 요청에 의해 전보권자의 승인으로 벽지학교와 준벽지학교를 제외한 희망학교에 우선 전보할 수 있다.

1. 연구·시범학교 운영과 체육 진흥 등 교육 시책 추진상 학교장의 요청에 의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2. 정원의 변경으로 인한 과원이 발생한 경우, 비경합지에 우선 전보할 수 있다.
3.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3년 이상 근무한 특수교사
4. 교육지원청 Wee센터에서 4년 이상 근무한 전문상담교사 <신설 2024.8.12.>
5. **공모교장 임기가 만료되어 교사로 임용되는 자 <신설 2025.8.12.>**

제16조(관외 전보 제청)

관외 전보는 학교장의 제청을 받아 본도 인사관리기준에 의거 시행한다.



제17조(과원 해소를 위한 전보)

① 과원 해소를 위한 관내 전보 임용제청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선 순위자를 그 대상자로 한다. <신설 2015.7.22.> <개정 2017.8.21.>

1. 본 교육지원청 관내 학교 장기 근무자
2. ~~현임교 장기 근무자~~ <삭제 2022.8.17.>
3. 교육 총 경력 하위자
4. 생년월일 후 순위자

② 정원의 변경, 학교 통폐합 등으로 과원이 발생하여 관내 전보가 불가피한 경우 전보할 수 있으며, 대상자 선정은 학교 규정에 의한다. <신설 2016.8.16.>

제 4 장 교육실습 협력학교 전입 <신설 2023.8.21.>

제18조(교육실습 협력학교 전입)

- ① 교육실습 협력학교의 전입은 특수성을 감안하여 전입을 위한 기준을 정하여 별도의 전입 서열명부에 의거 시행한다.
- ② 교육실습 협력학교 근무 기간은 동일교(삭제) 근속기간 4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4.8.12.>

제19조(전입 기준 및 가산점)

- ① 교육실습 협력학교의 전입 자격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지 자격: 초등학교 정교사(1급)
 2. 교육경력(실제 근무 경력): 5년 이상
- ② 교육실습 협력학교 전입을 위한 가산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하고, 등급 및 기간 구분 없이 각 호 1회 2점을 초과할 수 없고, 가산점 총점은 12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4.8.12.>
1. 도 단위 이상 학습지도 연구대회 입상 실적
 2. 수업연구교사 발표대회 입상 실적



3. 수업혁신사례 연구대회(구 교실수업개선실천사례 연구발표대회) 입상 실적
4. 도 단위 이상 연구대회(승진규정에 연구실적으로 인정하는 대회) 입상 실적
5. 미래교육(아이톡톡 또는 AI교육 포함) 또는 수업 관련 활동 경력 (하위 영역 1가지 이상 해당자, 최근 10년 이내) (2026.3.1. 전보부터 시행) <개정 2024.8.12.>

- | |
|--|
| 가. 도 단위 이상 아이톡톡 지원단 활동 경력(2년 이상) 또는 공문에 의한
교육지원청 단위 이상 아이톡톡 연수 주 강사 경력(2회 이상) |
| 나. 도 지정 AI 선도학교 주무 경력(학교 교원 전체 참여 형태) |
| 다. 도 단위 이상 수업(교육과정 포함) 관련 연수 주 강사 경력(2회 이상 활동) |
| 라. 도 지정 배움중심수업 나눔중심학교 주무 경력 |
| 마. 도 지정 초등교육 통합 지원단 경력(2년 이상) |

바. AI펜특 수업혁신 모델학교 운영 담당자 및 선도교사 <신설 2025.8.12.>

6. 교육실습 협력학교 교육력 제고 지원 영역 (하위 영역 1가지 이상 해당자, 최근 10년 이내) (2026.3.1. 전보부터 시행) <개정 2024.8.12.>

- | |
|---|
| 가. 도 단위 이상 다문화교육 또는 탈북 지원단 활동 경력(2년 이상) |
| 나. 도 지정 다문화 정책(연구)학교 주무 경력 또는 다문화교육 특별학급
담임교사 경력 |
| 다. 교육지원청 이상 기초학력 또는 두드림학교 지원단(컨설턴트) 경력(2년 이상) |
| 라. 도 지정 기초학력 보장 선도 또는 중심학교 주무 경력 |

- ③ 교육실습 협력학교 전입은 제11조(전보서열 명부 작성)에 의한 경력점과 가산점 및 제19조 ②항의 가산점을 합산한 전입 서열명부에 의거 시행한다.
(단, 가산점 입상 실적이 중복될 경우, 제19조 ②항을 우선하되 제11조 조항의 가산점과 중복하여 사용할 수 없고, 만기자의 경우 다른 일반 학교로 전보할 시에는 제11조 조항에 따른다.)

제 5 장 수석교사 전보

제20조(수석교사의 인사 구역 및 근속 연한)

- ① 수석교사의 인사 구역 근속 연한은 <표 1>과 같다.
- ② 당해 급지의 근속 연한은 수석교사 임용일부터 적용한다. <개정 2016.8.16.>



제21조(수석교사의 순환 및 희망 전보)

- ① 전보는 <표 1>과 같이 하되, 수석교사의 동일학교 근무 기간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동일 직위에 근속한 자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단, 실정에 따라 그 대상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6.8.16.>
- ② ‘가’급지 근속 연한 만료자는 ‘나’, ‘다’, ‘라’급지에 전보한다.
- ③ 수석교사 임용 직전의 직위로 복귀할 경우는 본인의 희망과 교사 수급 상황을 고려하여 전보한다.

제22조(수석교사의 배치)

- ① 수석교사는 초등학교에 1인을 단계적으로 배치한다. 단, 5학급 이하, 학생 수 100명 이하의 학교는 미배치할 수 있다.
- ② 수석교사 배치는 관내 급지, 학교 간의 전보, 학급 수를 고려하여 교육장이 행한다.

제23조(수석교사의 전보 유예)

정년퇴임 1년 이내의 수석교사는 본인의 희망과 소속 학교장의 요청에 따라 1회에 한하여 전보권자가 1년간 유예할 수 있다. <신설 2025.8.12.>

제24조(서열명부 작성)

- ① 수석교사는 학교별로 정원을 배정하고, 수석교사 간 전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교원 수급상 부득이한 경우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 ② 수석교사의 전보에서 경합이 있을 경우에는 경력점에 따라 남·여를 통합하여 희망 학교별로 전보서열 명부를 작성한다. <개정 2017.8.21.>
- ③ 경력점은 최근 4년간의 수석교사 근무 기간 중 <표 1>의 급지에 의거 다음 표와 같이 산출한다. <개정 2016.8.16.>



<표 4>

1년간 경력점 산출표

경력점	급지	가	나	다	라
1년간	6	7	8	9	
1년간(2018.3.1. 이후의 실적부터)	7.5	8	8.5	9	

- ④ 전보서열 명부 작성에 있어서 동점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하여 선 순위자를 결정한다. <개정 2017.8.21.>

- | | | |
|----------------|-------------|---------------|
| 1. 현임교 장기 근무자, | 2. 경력점 상위자, | 3. 생년월일 선 순위자 |
|----------------|-------------|---------------|



<표 5>

가산점 평정표

종별	평정대상	가산점	적용대상	비고
표창	1. 교육감 표창 이상, 훈포장 (모범공무원 표창 포함) 2. 타 부처 장관 표창 (학생지도 및 학교 과제해결에 한함) 3. 교육장 표창 4. 직속 기관장 표창	1.0 1.0 0.7 0.5	전교원	4년간 2회 적용 (동일 학년도 중복 경우 택일 적용)
근무실적	1. 도교육청 지정 이상 연구(시범, 실험) 학교 근무자 (교육협력 실습학교 포함) (6개월마다) 2. 2년간 복식학급 담당교사 (6개월마다) 3. 2년간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코-티처 - 6개월마다, 2025.2.28. 이전 실적 - 1개월마다, 2025.3.1. 이후 실적부터(단, 1년이면 0.5) - 1개월 미만의 경우, 15일 이상 근무할 시 1개월로 인정 - 영어보조교사 외 코-티처는 2018.3.1. 이후, 풀브라이트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코-티처는 2020.3.1. 이후 실적) 4. 2년간 지자체 지원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코-티처 (6개월마다) 5. 2년간 교과전담 및 순회(특수교사의 경우, 특수학급 및 특수학교만 해당)교사 (6개월마다) 6. 최근 4년간 (도내) 파견 근무자 (6개월마다) 7. 병설유치원, 특수학급 연구·시범학교 근무자 (1년마다) (교감, 교무, 연구부장(주무)) 8. 2년간 특수교육 대상 아동을 맡은 통합학급 담임교사 또는 복지 카드 1~3급 소지 학생의 담임 - 6개월마다, 2026.2.28. 이전 실적 0.25 - 1개월마다, 2026.3.1. 이후 실적 0.04(단, 1년이면 0.5) - 1개월 미만의 경우, 15일 이상일 시 1개월로 인정 9. 1·6학년 담임 (6개월마다, 단 1학년은 2021.3.1. 이후 실적) 10. 2년간 부장교사 (6개월마다, 2019.3.1. 이후 실적) 11. 전국소년체육대회 및 전국동계체육대회 입상 유공자 (교감 및 지도교사 포함: 합류교 포함) 1) 금메달 5.0점, 2) 은메달 2.5점, 3) 동메달 1.5점 11. 전국소년체육대회 및 전국동계체육대회 입상 유공자 (교감 및 지도교사 포함: 합류교 포함) (2028.3.1. 이후 실적부터 적용) 1) 금메달 3점, 2) 은메달 2점, 3) 동메달 1점 12. 직무수행과 관련되는 공적으로 전국 규모의 대회에서 국무총리 이상의 상장 수상자 또는 국무총리 이상의 지도자상 수상자 12. 직무수행과 관련되는 공적으로 전국 규모의 대회에서 국무총리 이상의 상장 수상자 또는 국무총리 이상의 지도자상 수상자 3점 (2028.3.1. 이후 실적부터 적용) 13. 2년간 초·중학교 종합체육대회 입상 유공자 (도 대회) 1) 1위 0.5점, 2) 2위 0.3점, 3) 3위 0.1점 단, 해당 실적 인정은 유공자 1인에 한함 13. 초중학교 종합체육대회 입상 유공자 (도 대회) 0.5 (2028.3.1. 이후 실적부터 적용) 단, 해당 실적 인정은 유공자 1인에 한함	0.25 0.5 0.25 0.04 0.25 0.5 0.25 0.3 0.25 0.04 0.25 0.25 0.5 5.0 3.0 5.0 3.0 0.5	전교원 전교원 전교원	4년간 누가 적용 (동일 학년도 중복 경우 택일 적용) <개정 2023.8.21.> 4년간 누가 적용 (5항, 9항은 동일 학년도 중복의 경우 택일 적용) <개정 2022.8.17.> <개정 2025.8.12.> 4년간 누가 적용 (동일 학년도 중복 경우 택일 적용) <개정 2023.8.21.> 2024.3.1. 전보부터 4년간 2회 적용 <개정 2022.8.17.> <개정 2025.8.12.>



종별	평정대상	가산점	적용대상	비고
근무 실적	14. 청렴도 향상에 기여한 자 (조사기관에 신고하여 금품 수수 10만원 이상, 공금횡령·유용 100만원 이상 위반 행위 발견에 기여한 경우) (현임교 1회만 인정)	0.5	전교원	
	15. 교감 미배치 교의 교감 업무 대행자 (1인만 인정) (6개월마다, 2018.3.1. 이후 실적)	0.25		
	16. 동지역 농산어촌승진가산점 미부여 학교 1) '가나' 급지 동일 학교에서 연속하여 3년 이상 근무한 자 2) '다라' 급지 동일 학교에서 연속하여 3년 이상 근무한 자	0.75 0.25	전교원	<17항 신설> 2028.3.1. 전부부터 택일 적용 <개정 2025.8.12.>
	17. '다라' 급지(동, 읍 면지역) 학교(2028.3.1. 전보부터 시행) 1) '다' 급지 학교 근무자(2년 초과 2년에 한하여 1년마다) 0.5 2) '라' 급지 학교 근무자(2년 초과 2년에 한하여 1년마다) 0.75	0.5 0.75		
	18. 교육지원청 근무 전문상담교사(6개월마다) - 2020.3.1.~2025.2.28. 실적 - 2025.3.1. 이후 실적부터	0.5 1.0	전문 상담 교사	<개정 2024.8.12.>
	19. 경상남도교육청 특수교육원 파견근무 (6개월마다) - 2021.3.1.~2023.2.28. 실적 - 2023.3.1. 이후 실적	0.5 1.0		<신설 2022.8.17.>
	20. 2년간 대규모 학교 근무 전문상담교사(6개월마다, 2025.3.1. 이후 실적부터) - 36학급 이상 42학급 이하 - 43학급 이상	0.25 0.3	전문 상담 교사	<신설 2024.8.12.>
	21. 전문상담교사 관련 자격증(평정 기간에 취득한 것): 청소년 상담사(여성가족부), 임상심리사/직업상담사(한국산업인력 공단), 사회복지사(보건복지부) (2025.3.1. 이후 실적부터)	0.5	전문 상담 교사	<신설 2024.8.12.>
연구 실적	1. 전국 단위 입상자 (학생지도 실적 포함-경남교육청 추천 대회에 한함) 2. 도 단위 입상자 3. 개인 작품 발표자 (2인 이내 저서 발표자 포함) - 2017.3.1.~2020.2.29. 실적에 한함	1.0 0.5 0.2	전교원	4년간 누가 적용(동일 학년도 중복 경우 택일 적용) 2024.3.1. 전보부터 4년간 2회 적용 <개정 2022.8.17.>
	4. 학습지도 연구대회 도대회 입상자, 수업연구교사 5. 수업명사 (취득 후 10년간) (2018.3.1. 수업명사 인증까지)	0.75 1.0		

* 정보화 자격 및 영어능력시험 관련 가산점은 삭제 (2024.3.1. 전보부터) <개정 2021.8.13.>

우우 조건	1. 국가유공자와 동 부양자(배우자와 직접 부양하는 자녀와 그 배우자), 순직한 교육공무원의 배우자, 자녀와 그 배우자 2. 부모(배우자 부모 포함)를 인사 당해 학년도 말일 기준으로 1년 이상 연속하여 직접 봉양하고 있는 자 3. 장애인(1년 이상 장애 증명 소지자) 본인 및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중 장애인(장애 증명 소지자)을 인사 당해 학년도 말일 기준으로 1년 이상 연속하여 직접 부양하고 있는 자 4. 55세 이상 교사	1.0 0.5 1.0 1.0	전교원	택일 적용 (증빙서류 첨부)
	5. 만 2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교원 ((준)벽지 전보 희망자 제외) 6. 자녀가 3명 이상인 교사 7. 자녀가 2명인 교사 (2021.3.1. 전보부터 적용) 8. 자녀가 1명인 교사 (2026.3.1. 전보부터 적용)	1.0 1.0 0.5 0.25	전교원	택일 적용 <신설 2024.8.12.>



<표 6>

1. 초등교사(특수·사서·상담교사) 및 교감 경력점 조견표(전보용)
(2018.2.28. 실적까지)

(인사 구역 급지 경력점)

월	가 급지	나 급지	다 급지	라 급지
1	0.50	0.58	0.67	0.75
2	1.00	1.17	1.33	1.50
3	1.50	1.75	2.00	2.25
4	2.00	2.33	2.67	3.00
5	2.50	2.92	3.33	3.75
6	3.00	3.50	4.00	4.50
7	3.50	4.08	4.67	5.25
8	4.00	4.67	5.33	6.00
9	4.50	5.25	6.00	6.75
10	5.00	5.83	6.67	7.50
11	5.50	6.42	7.33	8.25
12	6.00	7.00	8.00	9.00

2. 초등교사(특수·사서·상담교사) 및 교감 경력점 조견표(전보용)
(2018.3.1. 실적부터)

(인사 구역 급지 경력점)

월	가 급지	나 급지	다 급지	라 급지
1	0.63	0.67	0.71	0.75
2	1.25	1.33	1.42	1.50
3	1.88	2.00	2.13	2.25
4	2.50	2.67	2.83	3.00
5	3.13	3.33	3.54	3.75
6	3.75	4.00	4.25	4.50
7	4.38	4.67	4.96	5.25
8	5.00	5.33	5.67	6.00
9	5.63	6.00	6.38	6.75
10	6.25	6.67	7.08	7.50
11	6.88	7.33	7.79	8.25
12	7.50	8.00	8.50	9.00



<표 7>

초등학교 학급, 교사 수(2025.9.1.자) 및 인사급지표

순	학교명	학급 수			교사 수		연도					비 고
		일반	다문화	특수	상담	사서	2022	2023	2024	2025	2026	
1	가남	45			3	1	1	가	가	가	가	'17.3.1.개교
2	가양	64			2	1	1	가	가	가	가	'18.3.1.개교
3	가촌	58			3	1	1	가	가	가	가	'20.3.1.개교
4	금송	19			1					다	나	'25.3.1.개교
5	금오	33			1	1		가	가	가	가	'20.3.1.개교
6	대운	36	1	2	1			나	나	나	나	
7	덕계	22			3	1		나	나	나	나	
8	동면	30			1	1		다	나	나	나	'22.9.1.개교
9	동산	17			2			나	나	나	나	
10	물금	24			2	1		나	나	나	나	
11	백동	17	1	2	1			라	라	라	라	
12	범어	12			2			다	다	다	다	
13	북정	12						나	나	다	다	'06.3.1.개교
14	사송	19			1	1				다	나	'24.9.1.개교
15	삼성	11			2			다	다	다	다	
16	삼량	23			3			나	나	나	나	
17	상북	13			1			다	다	다	다	
18	서남	17			1	1		나	나	나	나	
19	서창	12	1	2				라	라	라	라	
20	석산	58			2	1	1	가	가	가	가	'13.3.1.개교
21	성산	34			2			가	가	가	가	'09.3.1.개교
22	소토	6			1			다	다	다	다	라
23	신기	14			1			다	다	다	다	
24	신명	17			3			다	다	다	다	
25	신양	21			2	1		가	가	나	나	'06.3.1.개교
26	신주	32				1	1	가	가	가	가	'15.3.1.개교
27	양산	13	1	1				다	다	다	다	
28	양주	15			2			나	나	나	나	다
29	어곡	8			1			라	라	라	라	
30	영천	6						다	다	다	다	
31	오봉	10			3			나	나	나	다	
32	용연	6			1			라	라	라	라	
33	웅상	27			2			다	다	다	다	
34	원동	6						나	나	나	나	
34-1	이천	3						(나)	(나)	(나)	(나)	
35	좌삼	6						나	나	나	나	
36	중부	18			2			나	나	나	나	
37	증산	62			2	1	1	가	가	가	가	'15.3.1.개교
38	천성	22			2	1		다	다	다	다	
39	평산	23			1	1		나	나	나	나	
40	하북	6						다	다	라	라	
41	화제	6						라	라	라	라	
42	황산	36			1			가	가	가	가	'08.3.1.개교
43	회야	37			1	1		나	나	나	나	'21.3.1.개교
계		976	4	64	18	6						



<표 8>

연구(시범·우수·중심)학교 및 교육실습 협력학교 일람표

순	교명	2021학년도	2022학년도	2023학년도	2024학년도	2025학년도
1	가남	도 단위-정책연구				
2	가양					
3	가촌					
4	금송					
5	금오					
6	대운					
7	덕계					
8	동면					
9	동산					
10	물금					
11	백동			도 단위-정책연구	도 단위-정책연구	도 단위-정책연구
12	범어					
13	북정					
14	사송					
15	삼성					
16	삽량					
17	상북					
18	서남					
19	서창					도 단위-정책연구
20	석산					
21	성산					
22	소토					
23	신기					
24	신명					
25	신양					
26	신주					
27	양산					
28	양주					
29	어곡					
30	영천					
31	오봉					
32	용연					
33	웅상					
34	원동					
34-1	이천					
35	좌삼					
36	중부				교육실습 협력학교	교육실습 협력학교
37	증산					
38	천성					
39	평산					
40	하북					
41	화제					
42	황산					
43	회야					



【부 칙】 (2003. 1. 15. 인사위 81841-105호)

제1조(시행일)

이 인사관리기준은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행안 예고)

- ① <표 4>의 전보 가산점 평정표 중 일부를 시행(안) 예고(<표 4>의 ‘비고’란 참조)와 같이 조정하여 2004학년도부터 시행한다.
- ② <표 4>의 연구실적 5. 정보화 관련된 자격증 취득자에 교원정보활용능력 인증자를 추가하고 2004학년도부터 해당자에게 가산점 0.5를 부여한다.

【부 칙】 (2004. 1. 7. 인사위 12109-95호)

제1조(시행일)

이 인사관리기준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행안 예고)

- 2004학년도 인사관리기준 중 아래 내용은 2005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함을 예고한다.
- ① <표 4>의 연구실적 5. 정보화 관련된 자격증 취득자에게(국가 기술자격 및 국가공인 기술자격에 의한 정보화 관련 자격증 소지자) 가산점 0.3점을 부여한다.
 - ② <표 4>의 연구실적에 6. 영어능력 시험실적을 추가하고 영어능력 시험성적 이 다음에 해당하는 자에게 가산점 0.3점을 부여한다.
 - TOEFL 시험성적 PBT 503 이상, CBT 177 이상
 - TOEIC 시험성적 595 이상
 - TEPS 시험성적 498 이상

【부 칙】 (2005. 1. 15. 인사위 학무과-394호)

제1조(시행일)

이 인사관리기준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행안 예고)

- 2005학년도 인사관리기준 중 아래 내용은 2006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함을 예고한다.
- ① <표1>의 이천분교장 급지는 『나』 급지로 한다.



- ② 제11조 ② 항은 ‘경력점은 최근 4년간의 근무 기간 중 <표1>의 급지에 의거 다음의 <표2>와 같이 산출하되, 현임교 이전의 경력은 『가』 급지로 간주한다.
- ③ <표4>의 근무실적 10과 11은 다음과 같이 조정한다.
 - 원동초 근무자(1년마다) 0.5점 - 화재초 근무자(1년마다) 0.25점
- ④ <표4>의 연구실적 5. 정보화 관련된 자격증 취득자에게(국가 기술자격 및 국가공인 기술자격에 의한 정보화 관련 자격증 소지자) 가산점 0.3점 부여 범위는 경상남도교육청 인사관리기준에 따른다.

【부 칙】 (2006. 1. 2. 인사위 학무과-39호)

제1조 (시행일)

이 인사관리기준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2007학년도 시행안 예고)

2006학년도 인사관리기준 중 아래 내용은 2007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함을 예고한다.

- ① <표5>의 연구실적에서 수업명사로 위촉된 자는 1.0의 전보 가산점을 부여한다.
- ② <표5>의 근무실적에서 2년간 특수교육 대상 아동을 맡은 통합학급 담임교사(2007년부터 1년마다)에게 0.25의 전보 가산점을 부여한다.

【부 칙】 (2007. 1. 8. 인사위 학무과-220호)

제1조 (시행일)

이 인사관리기준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2008학년도 시행안 예고)

2007학년도 인사관리기준 중 아래 내용은 2008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함을 예고한다.

- ① <표5>의 근무실적에서 좌삼초, 어곡초 근무자에게는 (1년마다) 0.20점의 가산점을 부여한다.
- ② 교감, 교사의 정기 및 희망 전보에서 학교 간의 전보는 <표1>과 같이 동일 학교 근무 1년 6개월 이상 5년의 범위 내에서 동일 직위에 근속한 자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부 칙】 (2008. 1. 4. 인사위 교육과-160호)



제1조 (시행일)

이 인사관리기준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 12. 23. 인사위 교육과-35518호)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09년 3월 1일 자 정기 인사부터 적용 · 시행한다.

제2조(시행안 예고)

가. 2009학년도 인사관리기준 중 아래 내용은 2010년 3월 1일 자 정기 인사부터 적용 · 시행함을 예고한다.

- ① <표 5> 가산점 평정표 근무실적란의 9항 「특수교사 순회 교사」에게도 2년간 1년마다 1점씩 가산한다.
- ② 2009년 3월 개교 예정인 성산초등학교의 급지는 『나』 급지로 지정하고, 2011년 3월 1일부터 『가』 급지로 지정한다.

나. 2009학년도 인사관리기준 중 아래 내용은 2011년 3월 1일 자 정기 인사부터 적용 · 시행함을 예고한다.

- ① 제15조 (전보 우선) ① 직무수행과 관련되는 공적으로 전국 규모 대회에서 국무총리 이상의 상장 또는 지도상 수상자 및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 금메달 획득 유공 지도교사(2005학년도 실적부터 인정)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전보 서열 명부에 구애됨이 없이 우선 전보할 수 있다. 단, 벽지학교는 제외한다.

【부 칙】 (2009. 12. 24. 인사위 교육과-41257호)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0년 3월 1일 자 정기 인사부터 적용 · 시행한다.

제2조(시행안 예고)

2010학년도 인사관리기준 중 아래 내용은 2011년 3월 1일 자 정기 인사부터 적용 · 시행함을 예고한다.

- ① <표 5>에서 학교과제 해결 및 직접 학생을 지도한 실적이 인정되는 타 부처 장관 표창은 1.0의 전보 가산점을 부여한다.



- ② <표 5>에서 초등교사 영어말하기 능력인증 취득자(경상남도교육감 인증)는 전보 가산점 0.3점을 부여한다. (유효기간 이내)
- ③ <표 1> 인사 구역에서 동면초등학교를 읍·면 지역 『다』 급지를 읍·면 지역 『라』 급지로 한다.
- ④ <표 5>의 가산점 평정표의 근무실적에 특수교육지원센터 근무 특수교사에서 6개월마다 0.5점을 부여한다.
- ⑤ <표 5>의 가산점 평정표의 우우 조건에 만 2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여자 교원에게는 1점을 부여한다.
- ⑥ <표 5>의 가산점 평정표의 근무실적에 6학년 담임에게 6개월마다 0.25점을 부여한다.

【부 칙】 (2011.1.11. 인사위 교수학습지원과-477호)

제1조

이 기준은 2011년 3월 1일 자 정기 인사부터 적용·시행한다.

제2조 (시행안 예고)

2011학년도 인사관리기준 중 아래 내용은 2012년 3월 1일 자 정기 인사부터 적용·시행함을 예고한다.

- ① <표 1> 인사 구역에서 오봉초등학교를 읍·면 지역 『가』 급지에서 2012.3.1.부터 읍·면 지역 『나』 급지로 한다.
- ② <표 1> 인사 구역에서 동산초등학교를 읍·면 지역 『다』 급지에서 2012.3.1.부터 읍·면 지역 『나』 급지로 한다.
- ③ <표 1> 인사 구역에서 북정초등학교를 동 지역 『다』 급지에서 2012.3.1.부터 동 지역 『나』 급지로 한다.
- ④ <표 5> 근무실적 중 5. 2년간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코-티처의 가산점을 지자체 지원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코-티처까지 확대하여(6개월마다 0.25점) 적용하되, 지자체 지원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코-티처는 2011.3.1. 이후 실적부터 적용한다.
- ⑤ <표 5> 근무실적 ‘교육과정 운영 지역 중심학교’도 연간 0.25점을 부여하되, 2011.3.1. 이후 실적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12. 1. 5. 인사위 교육지원과-229호)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2년 3월 1일 자 정기 인사부터 적용 · 시행한다.

제2조(시행안 예고)

2012학년도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기준 중 1호는 2013년 3월 1일 자 전입교사부터, 2~3호는 2012년 3월 1일 자 전입교사부터, 4~6호는 2013년 3월 1일 자 정기 인사부터 적용 · 시행함을 예고한다.

- ① 제9조 제②항 벽지학교 근무연한을 3년에서 2년으로 조정한다.
- ② 제11조 제②항 제3호 조항을 폐지한다.
- ③ <표 5> 가산점 평정표에서 근무실적 9호 ‘라’급지 근무자 가산점을 원동초등 학교 근무자는 1년마다 0.3점으로, 화제초등학교 근무자는 1년마다 0.1점으로 조정하고, 그 이외 학교 근무자의 가산점은 폐지한다.
- ④ <표 1>의 인사 구역에서 대운초등학교를 『다』 급지에서 2013.3.1.부터 『나』 급지로 한다.
- ⑤ <표 1>의 인사 구역에서 양산초등학교를 『나』 급지에서 2013.3.1.부터 『다』 급지로 한다.
- ⑥ <표 5> 가산점 평정표에서 근무실적 10호 2년간 특수학급 담임(1년마다) 가 산점은 폐지한다.

【부 칙】 (2012. 12. 17. 인사위 교육지원과-41505호)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3년 3월 1일 자 정기 인사부터 적용 · 시행한다.

제2조(시행안 예고)

2013학년도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기준 중 1~2호는 2013년 3월 1일 자 전입교사부터, 3, 5~7호는 2014년 3월 1일 자 정기 인사부터 적용 · 시행함을 예고한다. 4호는 2013년 3월 1일 자로 시행함을 예고한다. 8호의 ①항은 2014년 3월 1일 실적부터 적용 · 시행하고 ②항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함을 예고한다.

- ① 제9조 제②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함을 예고한다.



제9조 제②항 벽지학교에서 2년 또는 준벽지학교에서 4년을 근속한 자는 벽지와 준벽지를 제외한 학교로 전보한다. 다만, 벽지학교 또는 준벽지학교로 재전입을 원하는 경우는 전보 후 5년이 경과되어야 한다. (2026.3.1. 전보부터 시행) <개정 2024.8.12.>

- ② <표 5> 가산점 평정표에서 균무실적 9호 원동초, 화제초 균무자 가산점은 폐지한다.
- ③ <표 5> 가산점 평정표에서 표창 실적 4호는 0.5점, 연구실적 8호는 0.3점, 우우 조건 5호, 6호는 택일하여 연간 1.00을 부여한다.
- ④ <표 1>의 인사 구역에서 신설 학교 석산초등학교를 『나』 급지로 한다.
- ⑤ <표 1>의 인사 구역에서 덕계초등학교를 『가』 급지에서 2014.3.1.부터 『나』 급지로 한다.
- ⑥ <표 1>의 인사 구역에서 천성초등학교, 신기초등학교를 『나』 급지에서 2014.3.1.부터 『다』 급지로 한다.
- ⑦ <표 1>의 인사 구역에서 서창초등학교를 『다』 급지에서 2014.3.1.부터 『라』 급지로 한다.
- ⑧ 제15조 (전보 우선)은 다음과 같이 시행함을 예고한다.
 - 가. 제15조 (전보 우선)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자는 학교장의 요청에 의해 전보권자의 승인으로 벽지학교를 제외한 희망학교에 우선 전보할 수 있다.
 1. 직무수행과 관련되는 공적으로 전국 규모 대회에서 국무총리 이상의 상장 또는 지도상 수상자 및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 금메달 획득 유공 지도교사. 단. 전입학교 전입 가능 인원의 50% 이내로 하되, 1명일 경우에는 우선 배치하고, 경합일 경우는 제11조 ⑤항의 기준에 준하여 배치한다.
 - 나. 제15조 (전보 우선) ②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는 학교장의 요청에 의해 전보권자의 승인으로 벽지와 준벽지학교를 제외한 희망학교에 우선 전보할 수 있다.
 1. 연구·시범학교 운영과 체육 진흥 등 교육시책 추진상 학교장의 요청에 의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2. 정원의 변경으로 인한 과원이 발생한 경우
 3.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3년 이상 근무한 특수교사

【부 칙】 (2013. 12. 31. 인사위 교육지원과-23524호)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4년 3월 1일 자 정기 인사부터 적용 · 시행한다.

【부 칙】 (2014. 11. 27. 인사위 교육지원과-27729호)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5년 3월 1일 자 정기 인사부터 적용 · 시행한다.

제2조(시행안 예고)

2015학년도 인사관리기준 중 아래 내용은 2016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함을 예고한다.

- ① <표 5> 가산점 평정표의 표창은 아래와 같이 개정 시행한다.

종별	평 정 대 상	가산점	적용 대상	비 고
표창	1. 교육감 표창 이상, 훈포장(모범공무원 표창 포함) 2. 타 부처 장관(학생지도 및 학교 과제해결에 한함) 3. 교육장 표창 4. 직속기관장 표창(2010.3.1이후 실적)	1.00 1.00 0.70 0.50	전 교원	4년간 2회 적용 (동일 학년도 중복 경우 택일 적용, 2015.3.1. 이후) <개정 2014.11.27.>

2015학년도 인사관리기준 중 아래 내용은 2017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함을 예고한다.

- ② <표 5> 가산점 평정표의 근무실적(11-13항)은 아래와 같이 개정 시행한다.

종별	평 정 대 상	가산점	적용 대상	비 고
근무 실적	11. 전국소년체육대회 및 동계대회 입상 유공자 (교감 및 지도교사 포함 : 합류교 포함) - 금메달 5.0점, - 은메달 2.5점, - 동메달 1.5점 12. 직무수행과 관련되는 공적으로 전국 규모의 대회에서 국무총리 이상의 상장(지도자상) 수상자 13. 초.중학교 종합체육대회 입상 유공자 (도대회) (11,12,13항은 2016.3.1. 이후 실적부터 적용)	5.0 0.5	전 교원	4년간 누가 적용 (동일 학년도 중복 경우 택일 적용)

【부 칙】 (2015. 7. 22. 인사위 교육지원과-18958호)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6년 3월 1일 자 정기 인사부터 적용 · 시행한다.

제2조(시행안 예고)

2016학년도 인사관리기준 중 아래 내용은 2017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함을 예고한다.

- ① <표 1>의 인사 구역에서 석산, 신주, 증산초등학교를 『나』 급지에서 2017.3.1.부터 『가』 급지로 한다.



제3조

본 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2016 경상남도교육청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기준을 준용한다.

【부 칙】 (2016. 8. 16. 인사위 교육지원과-21761호)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7년 3월 1일 자 정기 인사부터 적용 · 시행한다.

제2조(시행 예고)

<표1>의 인사 구역에서 가남초등학교를 ‘나’급지에서 2018.3.1.부터 ‘가’급지로 한다.

제3조

본 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2017 경상남도교육청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기준을 준용한다.

【부 칙】 (2017. 8. 21. 인사위 교육지원과-18116호)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8년 3월 1일 자 정기 인사부터 적용 · 시행한다.

제2조(시행 예고)

<표1>의 인사 구역에서 가양초등학교를 ‘나’급지에서 2019.3.1.부터 ‘가’급지로 한다.

제3조

본 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2018 경상남도교육청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기준을 준용한다.

【부 칙】 (2018. 8. 13. 인사위 교육지원과-11125호)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9년 3월 1일 자 정기 인사부터 적용 · 시행한다.

제2조

본 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2019 경상남도교육청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기준을 준용한다.



【부 칙】 (2019. 8. 13. 인사위 교육지원과-11430호) (2019.12. 27. 인사위 교육지원과-17885호)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20년 3월 1일 자 정기 인사부터 적용 · 시행한다.

제2조(시행 예고)

- ① <표 7>의 인사급지표에서 신설 학교 가촌초등학교, 금오초·중학교를 2020.3.1.부터 ‘나’급지로 한다.
- ② <표 7>의 인사급지표에서 삽량초등학교, 중부초등학교를 동 지역 ‘2020.3.1.부터 ‘나’급지로 한다.

제3조

본 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2020 경상남도교육청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기준을 준용한다.

【부 칙】 (2020. 8. 14. 인사위 교육지원과-11338호)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21년 3월 1일 자 정기 인사부터 적용 · 시행한다.

제2조(시행 예고)

- ① <표 7>의 인사급지표에서 가촌초등학교, 금오초등학교를 ‘나’급지에서 2021.3.1.부터 ‘가’급지로 한다.
- ② <표 7>의 인사급지표에서 백동초등학교를 ‘다’급지에서 2022.3.1.부터 ‘라’급지로 한다.
- ③ <표 7>의 인사급지표에서 덕계2초등학교(가칭)를 동 지역 ‘다’급지에서 2022.3.1.부터 ‘나’급지로 한다.

제3조

본 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2021 경상남도교육청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기준을 준용한다.

【부 칙】 (2021. 8. 13. 인사위 교육지원과-12637호)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22년 3월 1일 자 정기 인사부터 적용 · 시행한다.

제2조(시행 예고)

<표 7>의 인사급지표에서 2022.9.1. 개교 예정인 동면초등학교를 ‘다’급지로 지정하고, 2023.3.1.부터 ‘나’급지로 한다.

제3조

본 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2022 경상남도교육청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기준을 준용한다.

【부 칙】 (2022. 8. 17. 인사위 교육지원과-14073호)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23년 3월 1일 자 정기 인사부터 적용 · 시행한다.

제2조(시행 예고)

- ① <표 7>의 인사급지표에서 북정초등학교를 ‘나’급지에서 2024.3.1.부터 ‘다’급지로 한다.
- ② <표 7>의 인사급지표에서 하북초등학교를 ‘다’급지에서 2024.3.1.부터 ‘라’급지로 한다.

제3조

본 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2023 경상남도교육청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기준을 준용한다.

【부 칙】 (2023. 8. 21. 인사위 교육지원과-14194호)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24년 3월 1일 자 정기 인사부터 적용 · 시행한다.

제2조(시행 예고)

- ① 신설 장 및 조항인 제4장 교육협력 실습학교 전입 및 제18조(교육실습 협력학교 전입), 제19조(전입 기준 및 가산점)는 2024. 3. 1. 전보부터 바로 적용한다.
- ② <표 7>의 인사급지표에서 2024.9.1. 개교 예정인 사송초등학교를 ‘다’급지로 지정하고, 2025.3.1.부터 ‘나’급지로 한다.
- ③ <표 7>의 인사급지표에서 신양초등학교를 ‘가’급지에서 2024.3.1.부터 ‘나’급지로 한다.



제3조

본 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2024 경상남도교육청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기준을 준용한다.

【부 칙】 (2024. 8. 12. 인사위 교육지원과-14120호)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25년 3월 1일 자 정기 인사부터 적용 · 시행한다.

제2조(시행 예고)

- ① 제9조 2항 ‘단, 벽지학교 또는 준벽지학교로 재 전입을 원하는 경우는 전보 후 5년이 경과되어야 한다.’를 2026.3.1. 전보부터 삭제한다.
- ② 제19조 2항 5조 및 6조를 최근 10년 이내 실적으로 개정하고, 하위 영역 개정 사항을 2026.3.1. 전보부터 시행한다.
- ③ <표 5>의 가산점 평정표 우우조건 8번에서 ‘자녀가 1명인 교사’에게 0.25점을 부여하는 것은 2026.3.1.자 전보부터 적용한다.
- ④ <표 1> 비고에서 ‘교사 준벽지 동일교 근속 연한 4년’을 ‘5년’으로 개정하여 2026.3.1. 전보부터 시행한다.
- ⑤ <표 7>의 인사급지표에서 2025.3.1. 개교 예정인 금송초등학교를 ‘다’급지로 지정하고, 2026.3.1.부터 ‘나’급지로 한다.
- ⑦ <표 7>의 인사급지표에서 오봉초등학교를 ‘나’급지에서 2025.3.1.부터 ‘다’급지로 한다.

제3조

본 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2025 경상남도교육청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기준을 준용한다.

【부 칙】 (2025. 8. 12. 인사위 교육지원과-14764호)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26년 3월 1일 자 정기 인사부터 적용 · 시행한다.

제2조(시행 예고)



① <표 5> 가산점 평정표의 근무실적(11~13항)은 아래와 같이 개정 시행한다.

종별	평정대상	가산점	적용대상	비고
근무실적(전)	11. 전국소년체육대회 및 전국동계체육대회 입상 유공자 (교감 및 지도교사 포함: 합류교 포함) 1) 금메달 5.0점, 2) 은메달 2.5점, 3) 동메달 1.5점 12. 직무수행과 관련되는 공적으로 전국 규모의 대회에서 국무총리 이상의 상장 수상자 또는 국무총리 이상의 지도자상 수상자 13. 2년간 초·중학교 종합체육대회 입상 유공자 (도 대회) 1) 1위 0.5점, 2) 2위 0.3점, 3) 3위 0.1점	5.0	전교원	4년간 누가 적용 (동일 학년도 중복 경우 택일 적용) <개정 2023.8.21.> 2024.3.1. 전보부터 4년간 2회 적용 <개정 2022.8.17.>
근무실적(후)	11. 전국소년체육대회 및 전국동계체육대회 입상 유공자 (교감 및 지도교사 포함: 합류교 포함) (2028.3.1. 이후 실적부터 적용) 1) 금메달 3점, 2) 은메달 2점, 3) 동메달 1점 12. 직무수행과 관련되는 공적으로 전국 규모의 대회에서 국무총리 이상의 상장 수상자 또는 국무총리 이상의 지도자상 수상자 3점 (2028.3.1. 이후 실적부터 적용) 13. 초중학교 종합체육대회 입상 유공자 (도 대회) 0.5 (2028.3.1. 이후 실적부터 적용) 단, 해당 실적 인정은 유공자 1인에 한함	3.0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② <표 5> 가산점 평정표의 근무실적 17항을 신설하고 16~17항은 아래와 같이 개정 시행한다.

종별	평정대상	가산점	적용대상	비고
근무실적(전)	16. 동지역 농산어촌승진가산점 미부여 학교 1) '가나' 급지 동일 학교에서 연속하여 3년 이상 근무한 자 2) '다라' 급지 동일 학교에서 연속하여 3년 이상 근무한 자	0.75 0.25	전교원	
근무실적(후)	16. 동지역 농산어촌승진가산점 미부여 학교 1) '가나' 급지 동일 학교에서 연속하여 3년 이상 근무한 자 2) '다라' 급지 동일 학교에서 연속하여 3년 이상 근무한 자 17. '다라' 급지(동, 읍·면지역) 학교(2028.3.1. 전보부터 시행) 1) '다' 급지 학교 근무자(2년 초과 2년에 한하여 1년마다) 0.5 2) '라' 급지 학교 근무자(2년 초과 2년에 한하여 1년마다) 0.75	0.75 0.25 0.5 0.75	현행과 같음	<17항 신설> 2028.3.1. 전부부터 택일 적용 <개정 2025.8.12.>

③ <표 5>의 가산점 평정표 근무실적 17번 '다·라' 급지(동, 읍·면지역) 학교를 신설하고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은 2028.3.1. 자 전보부터 적용한다.

④ <표 7>의 인사급지표에서 소토초등학교를 '다' 급지에서 2026.3.1.부터

‘라’급지로 한다.

- ⑤ <표 7>의 인사급지표에서 양주초등학교를 ‘나’급지에서 2026.3.1. 부터 ‘다’급지로 한다.
- ⑥ <표 7>의 인사급지표에서 덕계초등학교, 평산초등학교를 ‘나’급지에서 2027.3.1. 부터 ‘다’급지로 한다.



2026학년도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기준

유치원 (유치원·보건 교사)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교육공무원 인사 관계 제 법규 및 본도 인사관리기준에 의한 유치원 교원의 신규 배치 · 전보 · 관외 전입자 배치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기준은 본 경상남도양산교육지원청 공립유치원 교사(보건교사 포함) 및 원감에게 적용한다. <개정 2023.8.21.>

제3조(정기 전보)

유치원 교원의 정기 전보는 매년 3월 1일과 9월 1일에 실시한다. 단, 수석교사, 교사는 3월 1일에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비정기 전보)

① 수석교사, 교사의 경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동일 직위 최저 근무연한 이내 일지라도 전보할 수 있다. 다만 5, 6, 7, 8호는 전보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8호는 본인이 요청할 경우, 인사권자 소속 인사위원회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소명할 기회를 부여하고, 10호는 본인의 희망과 전보권자의 승인에 의하며, 3호 해당자로 전보된 자는 2년 이내 전 근무지에 가급적 전보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8.13.>

1. 정원의 변경, 승진, 강임의 경우
2. 직위해제 후 복직된 자
3. 징계처분을 받은 자
4. 감사 결과 인사조치 지시된 자
5. 당해 유치원 재직 시 3회 이상 징계에 이르지 않는 주의 또는 경고 처분을 받은 자
6.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 성적이 저조한 자. 단, 이 경우 학교(원)장은 전보 요청 전에 당해 교원의 능력개발을 위한 직무연수를 부과하여야 한다.



7.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3 제1항 각호의 사유와 관련하여 징계에 이르지 않은 주의 또는 경고 처분을 받은 자
8. 기타 인사 쇄신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9. 신체,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 요양을 필요로 하는 자
10. 교권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11. 동일유치원에 근무하는 직계 존·비속 및 부부 교직원 (병설유치원 초등학교 포함) <신설 2023.8.21.>

② 원감의 경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동일 직위 최저 근무연한 이내일지라도 전보하되, 10호는 본인의 희망에 의한다.

1. 직위해제 후 복직된 자
2. 징계처분을 받은 자
3. 행정 처분으로 인사조치가 결정된 자
4. 당해 유치원 재직 시 3회 이상 징계에 이르지 않는 주의 또는 경고 처분을 받은 자
5.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 성적이 저조한 자
6. 유치원 경영이 부실하거나 중대한 민원을 야기한 자
7. 기타 교육상 전보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자
8.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3 제1항의 각 호와 관련하여 징계에 이르지 않는 주의 또는 경고 처분을 받은 자
9. 신체,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 요양을 필요로 하는 자
10. 교권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③ ①항 2~8호 해당하는 자와 ②항 1~8호에 해당하는 자는 비경합지로 전보한다.

④ 원장은 유치원 운영상 전보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직권 내신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충분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비경합지에 내신하여야 한다.

제5조(인사 구역 및 근속 연한)

동일 직위 장기 근무로 인한 침체 방지와 생활근거지 및 희망지 전보로 교직의 안정을 기하기 위하여 <표 1>과 같이 인사 구역 및 근속 연한을 정하여 교원의 순환 전보를 실시한다.

제6조(전보 연한 계산과 가산점 평정)

전보 연한 계산과 경력 및 가산점 평정은 2월 말일, 8월 말일 현재로 하며 전보 연한의 계산에서 1월 미만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 2 장 신규 교원 배치 및 계약제 교원 임용

제7조(신규 교원 배치)

- ① 신규 유치원 교원의 배치는 본도 교육감이 배정한 자를 대상으로 교육장이 임용한다.
- ② 신규로 임용되는 자는 본시 인사 구역의 『가』 급지 유치원에 배치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하되, 전보서열 명부에 등재된 자가 없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8조(계약제 교원의 임용)

계약제 교원은 유치원 교사 임용 후보자 명부에 등재된 자 또는 유치원 교원 자격증 소지자를 원장이 임용한다.

제 3 장 유치원 교사 · 원감 전보

제9조(인사 구역 및 근속 연한)

- ① 동일 직위 장기 근무로 인한 침체 방지와 생활근거지 및 희망지 전보로 교직의 안정을 기하기 위하여 <표 1>과 같이 인사급지 및 근속 연한을 정하여 순환 전보를 실시한다.
- ② 교사 · 원감의 인사 구역 근속 연한은 <표 1>과 같이 한다. 단, 교사의 경우 단설유치원 근무경력 2년간은 ‘도’급지 근속 연한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21.3.1. 이후 전보부터 적용) <개정 2019.8.13.>
- ③ 벽지 병설유치원과 준벽지 병설유치원에서 만기 근속한 자는 일반 급지 유치원으로 전보한다. 단, 재전입을 원하는 경우는 전보 후 4년이 경과되어야 한다.
- ④ 벽지 병설유치원, 준벽지 병설유치원에 근무한 경력은 ‘도’ 급지 간의 근무연한(10년)에 산입하지 않는다. 단, 준벽지 유치원의 제외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9.8.13.>
- ⑤ 휴직 기간 및 파견된 기간은 당해 유치원 근무 기간에서 제외한다.



<표 1>

인사급지 및 동일 직위 동일 유치원 근속 연한(원감, 교사)

인사급지	해 당 유 치 원		유치원수	동일유치원 근무연한
가	신양, 삽량, 성산, 중부, 석산, 가남, 가양, 범어, 가촌		9	4년
나	양산, 삼성, 영천, 평산, 천성, 북정, 동산, 덕계, 회야		12	4년
	오봉유, 양산유, 물금유<개정 2025.8.12.>(2028.3.1.부터)			
준벽지	월동		1	4년
벽지	이천분교장		1	3년
다	소토, 상북, 하북, 서창, 용연, 웅상, 백동, 신명, 사송, 동면유, 명동유	사송유<신설 2025.8.12.>	12	4년
라	화제, 이곡		2	4년
비고	본 기준 시행 이전의 유치원 급지는 급지 조정 이전의 기준에 의한다. ■ 당해 연도 신설 유치원 급지는 “다급지”로 적용한다.			

제10조(순환 및 희망 전보)

- ① 유치원 간의 전보는 <표 1>과 같이 동일유치원 근무 기간 1년 이상 4년의 범위 내에서 동일 직위에 근속한 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 ② 익년도 도 인사 구역 급지간 순환 전보 대상자는 학년도 도중에 관내 전보 할 수 없다. 다만 휴·폐원, 정원조정 시는 예외로 한다. <신설 2024.8.12.>, <개정 2025.8.12.>
- ③ 원감은 직무수행능력, 유치원 평가, 장학 실적, 경력, 청렴성, 학부모 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보한다.
- ④ 원감의 경우 유치원 근속 연한 만료자가 급지 내 순환 전보지가 없을 경우 타시군으로 전보한다. <개정 2025.8.12.>

“경상남도교육청 2026.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기준 유치원(보건)·특수(유치원)”
 제5장 전보 제14조[교사·원감의 순환 및 희망전보]
 ⑦ 동일유치원 근속연한 만기자가 급지내 순환전보지가 없을 경우 타시군으로 전보한다. <개정 2025.6.23.>

- ⑤ 동일유치원 근속 연한 만기자로서 희망유치원에 전입되지 못한 교사는 조정 배치한다.
- ⑥ 파견근무 확정자는 전보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5.25.> 다만 만기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8.16.>



제11조(전보서열 명부 작성)

- ① 원감, 교사의 유치원 간 전보에서 경합이 있을 경우에는 경력점, 가산점을 합산하여 전보서열명부를 작성한다. <개정 2017.8.16.>
- ② 경력점은 최근 4년간의 근속기간 중 <표 1>의 급지에 의거 다음 표와 같이 산출하되 현임교 이전의 경력은 『가』 급지로 간주한다.

인사 구역 급지	가	나	다	라
1년간 경력점	6	7	8	9

* 휴직 기간 또는 파견 기간이 경력점 평정 기간 내에 있는 경우, 당해 평정 기간 직전의 실제 근무 기간에서 이월하여 당해 평정 기간에 산입한다. 단, 도 단위 교육행정, 연구, 연수, 수련기관 파견 근무자의 파견 기간은 당해 유치원 근무경력에 산입할 수 있다.

1. 타 시·도 및 타 시·군 전입자의 경력점은 본 시의『가』급지에 준한다. <개정 2017.8.16.>
 2. 경력점의 계산은 최근 4년에 한하여 연 단위로 계산하되, 1년 미만은 월 단위로 계산하고 15일 이상은 1월로 한다.
 3. 정원의 변경으로 인해 부득이 전보된 자(우선 전보되지 못한 자)는 전임유치원의 근무경력(가산점 포함)을 현임 유치원의 근무경력(가산점 포함)으로 볼 수 있다. <개정 2023.8.21.>

- ③ 가산점은 <표 3>에 의거 최근 4년간 현임 유치원에서 거양한 실적과 표창에 한하여 우수 조건을 포함한다. 단, 휴직 기간 또는 파견 기간이 평정 기간 내에 있는 경우, 당해 평정 기간 직전의 실제 근무기간에서 이월하여 당해 평정에 산입한다. (휴직 기간, 파견 기간 삽입은 2015.3.1. 이후 실적. 단, 도서벽지유치원과 준벽지 유치원 전보 희망자는 제외) <개정 2014.11.27.>

<표 3>에 의한 가산점 평정표 중 근무실적의 경력계산은 학년도를 기준으로 6 개월 단위로 한다. 단, 정보화 관련 자격(삭제) (2024.3.1. 전보부터 적용) <개정 2021.8.13.> 및 한국사능력 검정 자격은 취득시기와 관련 없이 인정하며<개정 2015.7.22.>, 수업명사 자격은 취득 후 10년간 전보 가산점을 부여한다.

- ④ 전보서열 명부 작성에 있어서 동점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고 순위자를 결정한다.

1. 현임 유치원 장기 근무자
 2. 본 시 경력점 상위자
 3. 생년월일이 빠른 자 <개정 2017.8.16.>

- ⑤ 전보서열 명부는 1년간 유효하며 전보 포기 희망자는 명부에서 삭제한다.



제12조(전보)

- ① 교사의 전보는 전보서열 명부에 의거 고순위자 순으로 전보한다.
- ② 원감의 전보는 유치원장의 제청을 받아 직무수행능력과 유치원 운영 실적 및 지도력 등을 감안하여 적재적소에 전보한다. (전보서열 명부 작성 예외) <신설 2023.8.21.>
- ③ 학기 중 휴·폐원, 정원조정으로 인한 교사 과원 발생 시 전보할 수 있다.
<신설 2024.8.12.>, <개정 2025.8.12.>

“경상남도교육청 2026.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기준 유치원(보건)·특수(유치원)”

제5장 전보 제16조[교사·원감의 전보]

- ③ 학기 중 휴·폐원으로 인한 교사 과원 발생 시 타시군으로 전보할 수 있다. <개정 2025.6.23.>

제13조(전입자 배치)

- ① 전입교사의 배치는 가급적 본시 인사 구역 『가』 급지 유치원에 배치하지 아니한다. 다만, 관내 전보 희망자 중 『가』 급지 유치원 희망자가 없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② 전입 원감의 배치는 직무수행능력을 감안하여 적재적소에 배치한다. <신설 2023.8.21.>
- ③ 타 시·군 전입자의 배치는 본도 전입교사 서열명부에 의거 배치한다.
- ④ 타 시·도 전입자의 배치는 타 시·군 전입자의 배치 후에 배치한다.
- ⑤ 부부 교원, 직계존비속 교원은 동일 학교 및 동일 유치원에 가급적 배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7.28.>

제14조(전보 우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자는 원장의 요청에 의해 전보권자의 승인으로 벽지와 준벽지 유치원을 제외한 희망 유치원에 우선 전보할 수 있다.

1. 직무수행과 관련되는 공적으로 전국 규모 대회에서 국무총리 이상의 상장 또는 지도상 수상자
2. 연구 . 시범유치원 운영상 원장의 요청에 의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3. 단설 설립이나 초등학교의 폐교와 같은 정책상의 문제로 폐원되거나 통폐합되어 과원이 발생한 경우는 전보우선 한다. 단, 전보 우선자 간 경합이 있을 경우는 제11조 ④항의 기준에 의해 고 순위자 순으로 배치한다.
4. **유아** 모집의 어려움으로 인한 휴·폐원, 학급 감축의 경우는 만기자와 같이 전보서열 명부의 고 순위자 순으로 전보한다. <개정 2023.8.21.>, <개정 2025.8.12.>



제15조(관외 전보 제청)

관외 전보 제청은 원장의 제청을 받아 본도 인사관리기준에 의거 시행한다.

제16조(전보 연한 계산과 경력 및 가산점 평정) <삭제 2023.8.21.>

- ① 전보연한계산과 경력 및 가산점 평정은 2월 말일, 8월 말일 현재로 한다.
- ② 정원변경으로 인해 부득이 전보된 자(우선 전보되지 못한 경우)는 전임 유치원의 근무경력을 현임 유치원의 근속 경력으로 볼 수 있다.

제17조(전보 유예)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본인의 희망과 소속 원장의 요청에 따라 1회에 한하여 전보권자가 1년간 유예할 수 있다.

- ① 도 지정 이상의 연구·시범유치원 근무자로서 진행 중인 연구가 완료되지 아니한 유치원의 원감, 연구부장(연구주무) 교사
- ② 정년퇴임 1년 이내인 자
- ③ 다자녀 교원(3자녀 이상) 중 미취학 유아가 있는 원감과 교사(단, (준)벽지 제외) <개정 2018.8.20.>
- ④ 행복유치원 운영상 꼭 필요한 핵심 교사(1명) (2021.3.1. 이후 실적) <신설 2020.8.14.>

제18조(과원 해소를 위한 전보) <신설 2023.8.21.>

- ① 과원 해소를 위한 관외 전보 임용제청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선 순위자를 그 대상으로 한다.

1. 본 교육지원청 관내 유치원 장기 근무자
2. 교육 총경력 하위자
3. 생년월일 후 순위자

- ② 정원의 변경, 유치원 통폐합 등으로 과원이 발생하여 관내 전보가 불가피한 경우 전보할 수 있으며, 대상자 선정은 유치원 규정에 의한다.



제 4 장 수석교사 전보

제19조(수석교사의 인사 구역 및 근속 연한)

① 수석교사의 인사 구역 및 근속 연한은 <표 2>와 같다.

<표 2>

인사 구역 및 동일 직위 동일 유치원 근무연한(수석교사)

인사 급지	해 당 유 치 원	유치원 수	동일유치원 근무연한
나	가 신양, 삽량, 성산, 중부, 석산, 가남, 가양, 범어, 가촌	9	4년
	일반 양산, 삼성, 영천, 평산, 천성, 북정, 동산, 덕계, 회야 오봉유, 양산유, 물금유<개정 2025.8.12.>(2028.3.1.부터 적용)	12	4년
	준벽지 원동	1	4년
	벽지 이천분교장	1	3년
다	소토, 상북, 하북, 서창, 용연, 웅상, 백동, 신명, 사송 , 동면유, 명동유, 사송유<신설 2025.8.12.>	12	4년
	라 화제, 어곡	2	4년
비 고	본 기준 시행 이전의 유치원 급지는 급지 조정 이전의 기준에 의한다. ■ 당해 연도 신설 유치원 급지는 “다급지”로 적용한다.		

② 당해 급지 및 동일 유치원 근속 연한은 수석교사 임용일부터 적용한다. <개정 2017.8.16.>

제20조(수석교사의 순환 및 희망 전보)

- ① 유치원 간 전보는 <표 2>와 같이 하되, 수석교사의 동일 유치원 근무 기간은 1년 이상 4년의 범위 내에서 동일 직위에 근속한 자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실정에 따라 그 대상을 조정할 수 있다.
- ② ‘가’, ‘나’ 급지 근속 연한 만료자는 ‘다’, ‘라’ 급지에 전보한다.
- ③ 수석교사 임용 직전의 직위로 복귀할 경우는 본인의 희망과 교사 수급 상황을 고려하여 전보한다.

제21조(수석교사의 배치)

- ① 수석교사는 가급적 단설유치원에 1인을 단계적으로 배치한다.
- ② 수석교사 배치는 유치원 교원 수급 사정을 고려하여 교육장이 행한다.



제22조(서열명부 작성)

- ① 수석교사는 유치원별로 정원을 배정하고, 수석교사 간 전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교원 수급상 부득이한 경우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 ② 수석교사의 전보에서 경합이 있을 경우에는 경력점에 따라 남·여를 통합하여 희망 교육지원청별로 전보서열 명부를 작성한다. <개정 2017.8.16.>
- ③ 경력점은 최근 4년간의 수석교사 근무 기간 중 <표 2>의 급지에 의거 다음 표와 같이 산출한다.

인사 구역 급지	가	나	다	라
1년간 경력점	6	7	8	9

- ④ 전보서열 명부 작성에 있어서 동점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하여 선 순위자를 결정한다.

1. 현임 유치원 장기 근무자
2. 본시 경력점 상위자
3. 생년월일이 빠른 자 <개정 2017.8.16.>

제23조(수석교사의 유예)

정년퇴임 1년 이내의 수석교사는 본인의 희망과 소속 교육장의 요청에 따라 1회에 한하여 전보권자가 1년간 유예할 수 있다.<신설 2025.8.12.>

“경상남도교육청 2026.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기준 유치원(보건)·특수(유치원)”

제7장 전보 제29조[수석교사의 전보유예]

정년퇴임 1년 이내의 수석교사는 본인의 희망과 소속 교육장의 요청에 따라 1회에 한하여 전보권자가 1년간 유예할 수 있다. <신설 2025.6.23.>



<표 3>

가산점 평정표

종별	평정대상	가산점	적용대상	비고
표창	1. 교육감 표장 이상, 훈포장(모범공무원 표장 포함) 2. 유치원 과제해결 및 직접 원아를 지도한 실적이 인정되는 타 부처 장관 표창 (2011.3.1. 이후 실적) 3. 교육장 표창 4. 직속기관장 표창(2012.3.1. 이후 실적. 단, 현 소속 직속기관과 파견된 직속기관으로부터 받은 표창은 불인정)	1.0 1.0 0.7 0.5	전교원	4년간 2회 적용 (동일 학년도 중복 경우 택일 적용)
근무	1. 교육지원청 지정 이상 연구(시범.실험) 유치원 근무자(6개월마다) <2015.3.1. 이후 실적 0.3> 2. 교육지원청 지정 이상 연구(시범.실험) 초등학교 근무자(6개월마다) <2015.3.1. 이후 실적 0.125> 3. 교육실습 협력유치원 근무자(6개월마다), 원감은 2012.3.1. 이후 실적(6개월마다) (2015.3.1. 이후 0.3) 4. 특수교육지원센터 근무(6개월마다) (2022.3.1. 전보부터 적용) (삭제) 5. 거점(지역·교육과정·통합교육)유치원 근무자 (6개월마다) (교육과정·통합교육 거점유치원 근무자는 2021.3.1. 이후 실적. 단, 통합교육거점유치원 근무자는 통합학급 담임교사에 한함) 6. 2년간 공립유치원 특수교육대상자의 담임 또는 복지 카드 1~3급 소지 유아의 담임 (2016.3.1. 이후 실적) <개정 2015.7.22.> <개정 2017.8.16.> ○ 6개월마다 ○ (6개월마다 0.3점-2026.3.1. 전보부터 적용)	0.5 0.25 0.5 1.0 0.5 0.5 0.3	전교원	4년간 누가 적용 (동일 학년도 중복 경우 택일 적용) <신설 2021.8.13.> <삭제 2023.8.21.>
실적	7. 2년간 방과후과정 담당 교사(2017.2.28.까지), 방과후 전담 교사 제외 (2016.3.1. 실적부터) <2015.7.22.> ○ 6개월마다 ○ 연중 방과후과정 운영 담당자 (연간 수업일수 260일 이상 운영자, 1년마다) 8. 2년간 단설유치원 근무자 (6개월마다) 9. 2년간 공립유치원 특수학급(삭제) 및 통합학급 담임교사 및 방과후 담당 교사 (6개월마다) <방과후 담당 교사 2013.3.1. 이후> (2016.2.29. 이전 실적) <2015.7.22.> (통합학급 담임교사 삭제 - 2026.3.1. 전보부터 적용) 10. 2년간 방과후과정 전담 교사 (2020.3.1. 이후 실적) (6개월마다) <신설 2019.8.13.> 11. 2년간 방과후과정 수업 교사 (2017.3.1. 이후 실적) ○ 연중 방과후과정 260일 이상 수업 교사 (1년마다) ○ 방과후과정 포함 1일 8시간 수업 교사 (6개월마다) <2016.5.25.>	0.25 1.0 0.5 0.25 0.25 1.0 0.5	전교원	4년간 누가 적용 (동일 학년도 중복 경우 택일 적용) <삭제 2023.8.21.>



종별	평정대상	가산점	적용대상	비고
근무실적	12. 1년간 신설 유치원 근무자 (6개월마다) - 신설유치원 근무자(2020.3.1. 이후 실적) - 거점형(단설·병설)유치원 근무자(2026.3.1. 이후 실적)	0.5	전교원	<신설 2019.8.13.> <개정 2025.8.12.>
	13. 청렴도 향상에 기여한 자 (조사기관에 신고하여 금품 수수 10만원 이상, 공금횡령·유용 100만원 이상의 위반 행위 발견에 기여한 경우) (현임교 1회만 인정)<2015.7.22.><개정 2020.8.14.>	0.5	전교원	2016. 3. 1. 이후 실적부터 적용
	14. 2년간 부장교사 (6개월마다) (2021.3.1. 이후 실적)	0.5	전교원	<신설 2020.8.14.>
연구실적	15. 최근 4년간 파견근무자(6개월마다)	0.25	전교원	<신설 2021.8.13.>
	16. 최근 2년간 12학급 이상 단설유치원 근무 원감 (6개월마다)	0.25	전교원	<신설 2022.8.17.>
	17. 원감 미배치 단설유치원의 원감 업무 대행자 (1인만 인정) (6개월마다)	0.25	전교원	(2022.3.1. 이후 실적부터)
	1. 도 단위 이상 입상자 2. 개인 작품 발표자 및 저서 집필자 (2인 공저 포함) - 2017.2.28. 이전 실적<개정 2016.5.25.> - 2017.3.1. ~ 2020.2.29. 실적 <개정 2019.8.13.>	1.0 0.5 0.2	전교원	4년간 2회 적용 (동일 학년도 중복 경우 택일 적용) <개정 2021.8.13 > (2024.3.1. 전보부터 적용)
	3. 정보화 관련 자격증 취득자<삭제>			<개정 2021.8.13 >
	4. 영어능력 시험<삭제>			<개정 2021.8.13 >
우우조건	5. 수업명사	1.0	전교원	취득 후 10년간
	6.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 이상(임용 전 자격취득 포함)	0.3	전교원	
우우조건	1. 국가유공자와 동 부양자(배우자, 직접 부양하는 자녀와 그 배우자), 순직한 교육공무원의 배우자, 자녀와 그 배우자 2. 부모(배우자 부모 포함)를 단절 없이 인사 당해 학년도 말일 기준으로 1년 이상 연속하여 직접 봉양하고 있는 자 3. 장애인(1년 이상 장애 증명 소지자) 본인 및 배우자, 직계 존비속 중 장애인(장애 증명 소지자)을 인사 당해 학년도 말일 기준으로 1년 이상 연속하여 직접 부양하고 있는 자	1.0 0.5 1.0	전교원	택일 적용 <2017.8.16.>
	4. 만 55세 이상 교사	1.0	전교사	<신설 2019.8.13.>
	5. 자녀가 3명 이상인 교사	1.0	전교원	택일 적용
	6. 만 2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교원 (단, (준)벽지 제외) <개정 2018.8.21.>	1.0	전교원	<신설 2021.8.13.>
	7. 자녀가 2명인 교사 (2022.3.1. 전보부터 적용)	0.5		
	8. 자녀가 1명인 교사 (2026.3.1. 전보부터 적용)			<신설 2024.8.12.>



<표 4>

유치원 학급, 교사 수(2025.9.1.자) 및 인사급지표

순	유치원 명	학급수 (특수학급)	교사수		년도별 인사급지					비 고
			특수(기)	방과후전담	2021	2022	2023	2024	2025	
1	가남	2		1	가	가	가	가	가	'17.3.1. 개원 2025.3.1. 1학급 감축
2	가양	3		1	가	가	가	가	가	'18.3.1. 개원
3	가촌	4(1)	1	1	가	가	가	가	가	'20.3.1. 개원
4	덕계	3(1)	1	1	나	나	나	나	나	
5	동산	1			나	나	나	나	나	
6	물금				폐원	폐원	폐원	폐원	폐원	'14.3.1. 폐원
7	백동	1			다	다	다	다	다	
8	범어	1			가	가	가	가	가	'18.3.1. 개원 2025.3.1. 1학급 감축
9	북정	2(1)	1		나	나	나	나	나	2025.3.1. 정원1명감축
10	삼성	1			나	나	나	나	나	
11	삼량	3(1)	1	2	가	가	가	가	가	'20.3.1. 3학급 증설 2025.4.25. 1학급 감축
12	상북	1			다	다	다	다	다	
13	서창				다	다	휴원	휴원	휴원	'23.3.1. 휴원
14	석산	3(1)	1	1	가	가	가	가	가	
15	성산	3		1	가	가	가	가	가	
16	소토				다	다	다	휴원	휴원	'24.3.1. 휴원
17	신명	1			다	다	다	다	다	
18	신양	4(1)	1	1	가	가	가	가	가	
19	양산	2(1)	1	1	나	나	나	나	나	
20	어곡	1			라	라	라	라	라	
21	영천	1			나	나	나	나	나	
22	오봉				폐원	폐원	폐원	폐원	폐원	'14.3.1. 폐원
23	용연	1			다	다	다	다	다	
24	웅상	1			다	다	다	다	다	
25	원동	1			나	나	나	나	나	
26	원동이천	1			나	나	나	나	나	
27	좌삼				폐원	폐원	폐원	폐원	폐원	'14.3.1. 폐원
28	중부	3(1)	1	1	가	가	가	가	가	
29	천성	1			나	나	나	나	나	
30	평산	1			나	나	나	나	나	
31	하북				다	다	휴원	휴원	휴원	'23.3.1. 휴원
32	화제	1			라	라	라	라	라	
33	양산유치원	10(2)	2(1)	4	다	다	다	다	다	
34	오봉유치원	7(1)	(1)	4	다	다	다	다	다	'19.3.1. 개원
35	물금유치원	17(2)	2(1)	7	다	다	다	다	다	'21.3.1. 개원
36	회야	3(1)	1	1	다	나	나	나	나	'21.3.1. 개원
37	동면유치원	14(2)	2	5	다					'22.3.1. 개원
38	명동유치원	5		2	다					'23.3.1. 개원
39	시송유치원	11(2)	2(1)	5	다					'25.3.1. 개원 2025.9.1. 특수1학급증설
40	시송	3		1	다					'25.3.1. 개원
계		99(18)	14(4)	40						



<표 5>

방과후과정 운영 담당 교사 일람표

순	원명	방과후과정 운영 담당 교사		
		2014	2015	2016
1	덕계	권도희, 고영희, 권은주	권도희, 정수연, 고영희	권도희, 박용도, 정수연(6개월)
2	동산	성윤희, 김소영	성윤희, 김소영	김소영
3	물금	주정순	•	•
4	백동	전봉선, 이해정	이혜정, 신진희	이혜정, 신진희
5	범어	•	•	•
6	북정	송길숙, 이복숙	송길숙, 이복숙	송길숙, 이복숙
7	삼성	이혜미	이혜미	이혜미
8	狎량	박수진, 이창미(6개월)	신민하	신민하, 이창미
9	상북	김명화	이미애	이미애
10	서창	강수진	강수진	강은지
11	석산	김은주, 서자옥	김은주	김은주
12	성산	윤나리	강은지, 윤나리	서은정
13	소토	박경미	박경미	박경미
14	신명	김계진	김계진	조영래
15	신양	성수영, 박용도, 명미정, 김미숙	성수영, 서은정, 장정민, 서경라	성수영, 조수현, 성윤희
16	양산	김지영, 최윤서	김지영, 최윤서	김지영, 최윤서
17	어곡	우정희	박혜은	박혜은
18	영천	조영래	조영래	김계진
19	오봉	서경라, 장정민	•	•
20	용연	추점자	추점자	추점자(2016.8.31. 정년퇴임)
21	웅상	유수진	권은주	권은주
22	원동	우기자	우기자	우기자
23	이천분교	신민하	우정희	우정희
24	좌삼	•	•	•
25	중부	김혜숙, 전을숙, 이은정	전봉선, 전을숙, 조수현(6개월)	전을숙, 김혜숙, 박수진
26	천성	성주원	유수진	유수진
27	평산	이미애, 유수정	유수정	유수정, 주정순
28	하북	박혜은, 김미경	김미경	김미경
29	화제	김선녀	김선녀	김선녀
30	양산유치원		성주원, 박용도 이은정, 명미정, 박수진	옥일화, 황선자, 김희은 명미정, 김미은



【부 칙】 (2003. 1. 15. 인사위 81841-105호)

제1조(시행일)

이 인사관리기준은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2004학년도 시행안 예고)

2003학년도 인사관리기준 중 아래 내용은 2004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함을 예고한다.

- ① <표 4> 연구실적의 4. 정보화 관련 자격증 취득자 ‘교원 정보활용능력 인증자’를 추가하고 해당자에게 부가점을 0.5를 부여한다.

【부 칙】 (2004. 1. 7. 인사위 12109-95호)

제1조(시행일)

이 인사관리기준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2005학년도 시행안 예고)

2004학년도 인사관리기준 중 아래 내용은 2005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함을 예고한다.

- ① <표 4>의 연구실적 3.정보화 관련 자격증 취득자(국가 지술자격 및 국가공인 기술자격에 의한 정보화 관련 자격증 소지자) 가산점 0.3점을 부여한다.

【부 칙】 (2005. 1. 15. 인사위 학무과-394호)

제1조(시행일)

이 인사관리기준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행안 예고)

2005학년도 인사관리기준 중 아래 내용은 2006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함을 예고한다.

- ① 제11조 ② 항은 ‘경력점은 최근 4년간의 근무 기간 중 <표1>의 급지에 의거 다음의 <표2>와 같이 산출하되, 현임교 이전의 경력은 『가』 급지로 간주한다.’

【부 칙】 (2006. 1. 2. 인사위 학무과 - 39호)

제1조(시행일)

이 인사관리기준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행안 예고)



2006학년도 인사관리기준 중 아래 내용은 2007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함을 예고한다.

- ① <표4> 근무실적에서 원동초 병설유치원 근무자는 1년마다 0.5의 가산점을 부여한다.

【부 칙】 (2007. 1. 8. 인사위 학무과-220호)

제1조(시행일)

이 인사관리기준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행안 예고)

2007학년도 인사관리기준 중 아래 내용은 2008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함을 예고한다.

- ① 유치원 간의 전보는 동일 직위, 동일 유치원 근무 1년 6개월 이상 근속한 자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 ② <표 4> 가산점 평정표(유) 근무실적에 종일반 운영 담당자(1년마다)의 가산점 0.5를 부여하고, 방학 중 종일반 운영 담당자(수업일수 260일 이상)에게는 1.0을 부여한다.
- ③ <표 4> 가산점 평정표(유) 연구실적에 영어능력 시험을 추가하고, 다음 해당자에게 0.3점을 부여한다. (유효기간 이내)
- TOEFL 시험성적 CBT 177 이상, - TOEIC 시험성적 595 이상, - TEPS 시험성적 498 이상

【부 칙】 (2008. 1. 4. 인사위 교육과-160호)

제1조(시행일)

이 인사관리기준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2009학년도 시행안 예고)

2008학년도 인사관리기준 중 아래 내용은 2009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함을 예고한다.

- ① 원감의 경우 유치원 근무연한 만료자가 급지내 순환 전보지가 없을 경우 타 급지로 전보한다.
- ② <표 4> 근무실적에 2년간 지역센터 유치원 근무자에게(1년마다) 가산점 0.5점을 부여한다.
- ③ <표 4> 연구실적에 수업명사에게 1.0을 부여한다.

【부 칙】 (2008. 12. 23. 인사위 교육과-35518호)

제1조(시행일)



이 인사관리기준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 12. 24. 인사위 교육과-41257호)

제1조(시행일)

이 인사관리기준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2010학년도 시행안 예고)

2010학년도 인사관리기준 중 아래 내용은 2011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함을 예고한다.

- ① <표 1> 인사 구역에서 북정초 병설유치원을 『다』 급지에서 『나』 급지로 한다.

【부 칙】 (2012. 1. 5. 인사위 교육지원과-229호)

제1조(시행일)

이 인사관리기준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 12. 17. 인사위 교육지원과-41505호)

제1조(시행일)

이 인사관리기준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행안 예고)

1. 제9조 제②항에 벽지유치원에서 3년, 준벽지 유치원에서 4년 이상 근속한 자는 일반 급지 유치원으로 전보한다. 다만, 재 전입을 원하는 경우는 전보 후 4년이 경과되어야 한다.
2. 제10조 ③항 원감의 지역근속 만기자는 동일 유치원 근속 연한이 1년 6개월 미만이라도 전보해야 한다는 조항은 삭제한다.
3. 제11조 ②항의 1. 본 시 『라』 급지 초과 경력은 『라』 급지 계속 근무자에 한하여 2년간 1년마다 1점을 가산한다를 삭제함을 시행 예고한다.
4. 제14조 전보우선 제한에 준벽지 유치원을 추가한다.
5. <표 5> 가산점 평정표에서 근무실적 4호 교육실습 협력유치원 근무자에게 6개월마다 0.5점의 가산점을 부여한다를 신설한다.
6. <표 5> 가산점 평정표에서 근무실적 4호 원동초등학교병설유치원 근무자 1년마다 0.5점의 가산점은 폐지한다.
7. <표 5> 가산점 평정표에서 연구실적 6호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 이상자에



게 0.3점의 가산점을 부여한다를 신설한다.

8. <표 5> 가산점 평정표에서 우우 조건 5. 자녀가 3명 이상인 교사에게 1.0의 가산점을 부여한다를 신설한다.
9. <표 1>의 인사 구역에서 중부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을 『나』 급지에서 2014.3.1부터 『가』 급지로 한다.
10. <표 1>의 인사 구역에서 동산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을 『다』 급지에서 2014.3.1.부터 『나』 급지로 한다.
11. <표 1>의 인사 구역에서 서창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을 『나』 급지에서 2014.3.1.부터 『다』 급지로 한다.
12. <표 1>의 인사 구역에서 원동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을 『라』 급지에서 2014.3.1.부터 『나』 급지로 한다.
13. <표 1>의 인사 구역에서 신설 유치원인 석산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을 『다』 급지로 한다.

【부 칙】 (2013. 12. 31. 인사위 교육지원과-23524호)

제1조(시행일)

이 인사관리기준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행안 예고)

1. <표 1>의 인사 구역 및 동일 직위 동일 유치원 근무연한에서 벽지인 원동 이천분교 병설유치원의 동일 유치원 근무연한을 3년에서 2년으로 한다.
2. <표 1>의 인사 구역에서 석산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을 『다』 급지에서 2014.3.1.부터 『가』 급지로 한다.
3. <표 1>의 인사 구역에서 2015.3.1.자 개원 예정인 양산단설유치원(가칭)은 2015학년도에 『다』 급지로 한다.
4. <표 5> 가산점 평정표에서 표창 4호 직속기관장 표창(2012.3.1. 이후 실적. 단, 현 소속 직속 기관과 파견된 직속 기관으로부터 받은 표창은 불인정)을 받은 자에게 0.5점의 가산점을 부여한다를 신설한다.
5. <표 5> 가산점 평정표에서 근무실적 5호의 2년간 공립유치원 특수학급 및 통합 학급 담임교사(6개월마다) 0.25점 부여를 방과후과정 담당자에게도 부여한다(단, 근무실적 5호의 방과후과정 담당자의 가산점 부여는 2013학년도부터 시행한다).
6. 경상남도 인사관리기준 시행 예고 안에 의거 도 인사급지의 '가' 급지 근무연



한을 7년에서 8년으로 근속 연한을 정하여 실시한다.

7. 경상남도 인사관리기준 시행 예고 안에 의거 도 인사급지의 ‘나’급지 근무연한을 8년에서 10년으로 근속 연한을 정하여 실시한다.
8. 경상남도 인사관리기준 시행 예고 안에 의거 교사, 원감은 도 인사급지 ‘가’, ‘나’급지의 근속 연한은 통산하여 10년을 초과할 수 없다.

【부 칙】 (2014. 11. 27. 인사위 교육지원과-27729호)

제1조(시행일)

이 인사관리기준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행안 예고)

1. 가산점은 <표 3>에 의거 최근 4년간 현임 유치원에서 거양한 실적과 표창에 한하되 우우 조건을 포함한다. 단, 휴직 기간 또는 파견 기간이 평정 기간 내에 있는 경우, 당해 평정 기간 직전의 실제 근무 기간에서 이월하여 당해 평정에 산입한다. (휴직 기간, 파견 기간 삽입은 2015.3.1. 이후 실적, 도서벽지 유치원과 준벽지 유치원 전보 희망자는 제외) <개정 2014.11.27.>
2. <표 1>의 인사 구역에서 양산유치원(단설)은 2015.3.1. 『다』 급지로 한다.
3. 가산점 평정표 근무실적에 「6. 단설유치원 근무자 (6개월마다) 0.5」를 신설 한다. <2015.3.1. 이후>
4. <표 3>의 가산점 평정표의 근무실적 평정을 다음과 같이 적용함을 시행 · 예고한다. <2015.3.1. 이후>

종별	평 정 대 상	가산 점	적용 대상	비 고
근 무 실 적	1. 교육지원청 지정 이상 연구(시범·실험) 유치원 근무자 (6개월마다) <2015.3.1. 이후 0.3>	0.3	해당 교원	4년 누가 적용 (동일 학년도 중복 경우 택일 적용)
	2. 교육지원청 지정 이상 연구(시범·실험) 초등학교 근무자(6개월마다) <2015.3.1. 이후 0.125>	0.125		
	3. 교육실습 협력유치원 근무자(6개월마다) 0.5, 원감은 2012.3.1. 이후 실적 <2015.3.1. 이후 0.3>	0.3		
	4. 지역거점(센터)유치원 근무자(6개월마다)	0.5	해당 교원	4년 누가 적용 (동일 학년도 중복 경우 택일 적용)
	5. 2년간 방과후과정 운영 담당자 ○ 6개월마다 ○ 연중 방과후과정 운영 담당자(연간 수업일수 260일 이상 1년마다)	0.25 1.0	해당 교원	4년 누가 적용 (동일 학년도 중복 경우 택일 적용)
	6. 2년간 단설유치원 근무자 (6개월마다) <2015.3.1. 이후>	0.5		



【부 칙】 (2015. 7. 22. 인사위 교육지원과-18958호)

제1조(시행일)

이 인사관리기준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시행안 예고)

1. <표 1>의 인사 구역에서 양산유치원(단설)은 2016.3.1.부터 『가』 급지로 한다.
2. <표 3>의 가산점 평정표의 근무실적 평정을 다음과 같이 적용함을 시행·예고한다. <2016.3.1. 이후>

종별	평 정 대 상	가산 점	적용 대상	비 고
근무 실적	4. 지역거점(센터) 유치원 근무자 (6개월마다)	0.5	전 교원	4년간 누가 적용 (동일 학년도 중복 경우 택일 적용) <개정 2015.7.22.> (6개월마다)
	5. 2년간 공립유치원 특수교육대상자의 담임 (2010.3.1. 이후) 또는 복지카드 1~3급 소지 유아의 담임 (2016.3.1. 이후 실적) <개정 2015.7.22.> (6개월마다)	0.5		
	6. 2년간 방과후과정 담당 교사 (방과후전담 교사 제외, 2016.3.1. 실적부터) <개정 2015.7.22.> ○ 6개월마다	0.25		
	○ 연중 방과후과정 운영 담당자 (연간 수업일수 260일 이 상 운영자, 1년마다)	1.0		
	7. 2년간 단설유치원 근무자 (6개월마다)	0.5		
	8. 2년간 공립유치원 특수학급 및 통합학급 담임교사 및 방과후 담당 교사(6개월마다) <방과후담당 교사 2013.3.1. 이후> (2016.2.29. 이전 실적) <개정 2015.7.22.>	0.25		
	9. 청렴도 향상에 기여한 자(금품수수 10만원 이상, 공금횡령·유 용 100만원 이상 신고)(현임교 1회만 인정) <신설 2015.7.22.>	0.5		
			전 교원	2016.3.1. 이후 실적부터 적용

【부 칙】 (2016. 8. 8. 인사위 교육지원과- 21483호)

제1조(시행일)

이 인사관리기준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시행안 예고)

1. <표 1>의 인사 구역에서 양산유치원(단설)은 2017.3.1.부터 『나』 급지로 한다.
2. <표 1>의 인사 구역에서 원동 이천분교 병설유치원(벽지)의 근속 연한은
2018.3.1.부터 3년으로 한다.
3. <표 1>의 인사 구역에서 2017.3.1.자 신설 개원인 가남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은
2017학년도에는 『다』 급지로 한다.
4. 제14조 전보우선 ①, ② 항은 기존 유지하고 ③항은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시행함을 예고한다.
③ 단설 설립이나 초등학교의 폐교와 같은 정책상의 문제로 폐원되거나 통



폐합되어 과원이 발생한 경우는 전보우선 한다. 단, 전보 우선자 간 경합이 있을 경우는 제11조 ⑤항의 기준에 의해 고 순위자 순으로 배치한다.

- ④ 원아 모집의 어려움으로 인한 폐원, 학급 감축의 경우는 만기자와 같이 전보서열 명부의 고 순위자 순으로 전보한다.

제3조

본 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2017. 경상남도교육청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기준(유치원)을 준용한다.

【부 칙】 (2017. 08. 16. 인사위 교육지원과-17998호)

제1조(시행일)

이 인사관리기준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본 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2018. 경상남도교육청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기준(유치원)을 준용한다.

【부 칙】 (2018. 08. 21. 인사위 교육지원과-11139호)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9년 3월 1일 자 정기 인사부터 적용·시행한다.

제2조 (시행안 예고)

1. <표 1>의 인사 구역에서 덕계초 병설유치원은 2019.3.1.부터 『나』 급지로 한다.
2. <표 1>의 인사 구역에서 가남초 병설유치원은 2019.3.1.부터 『가』 급지로 한다.
3. <표 1>의 인사 구역에서 2019.3.1.자 신설 개원인 오봉유치원(가칭)은 2019학년도에는 『다』 급지로 한다.
4. <표 1>의 인사 구역에서 가양초 병설유치원과 범어초 병설유치원은 2018학년도는 『다』 급지로 지정하며 2019.3.1.부터 『가』 급지로 한다.

제3조

본 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2019. 경상남도교육청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기준(유치원, 유치원특수)을 준용한다.



【부 칙】 (2019. 8. 13. 인사위 교육지원과-11430호)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20년 3월 1일 자 정기 인사부터 적용 · 시행한다.

제2조(시행 예고)

1. <표 1>의 인사급지표에서 신설 가촌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을 2020.3.1.부터 『다』 급지로 한다.
2. <표 1>의 인사급지표에서 양산유치원은 2020.3.1.부터 『다』 급지로 한다.
3. 제9조 인사 구역 및 근속 연한에서 교사·원감의 인사 구역 근속 연한은 <표 1>과 같이하되, 단 교사의 경우 가, 나 급지를 통산하여 단설유치원 근무경력 2년간(2020.3.1. 이후 적용)은 급지의 근속 연한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전보서열 명부작성의 가산점 평정표 <표 3>에서 2년간 방과후과정 전담교사 (2020.3.1. 이후 실적)는 6개월마다 0.25점을 부여한다.
5. 전보서열 명부작성의 가산점 평정표 <표 3>에서 1년간 신설 유치원 근무자 (2020.3.1. 이후 실적)는 6개월마다 0.5점을 부여한다.

제3조

본 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2020. 경상남도교육청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기준(유치원, 유치원특수)을 준용한다.

【부 칙】 (2020. 8. 14. 인사위 교육지원과-11338호)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21년 3월 1일 자 정기 인사부터 적용 · 시행한다.

제2조(시행 예고)

1. 제1장 제2조의 적용 범위에서 특수교육지원센터 교사도 포함하여 적용한다.
2. <표 1>의 인사급지에서 2021.3.1.자 개원 예정인 강서유치원(가칭), 덕계2초등학교 병설유치원(가칭)을 2021.3.1.에 『다』 급지로 한다.
3. <표 1>의 인사급지에서 특수교육지원센터는 2020.3.1.부터 『다』 급지로 한다.
4. 제17조 ③항 원감의 경우 비경합 유치원에 한하여 본인의 희망과 원장의 전보 유예 신청에 따라 동일유치원 근무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급지 간 순환 전보 대상자 및 유고자는 제외한다는 조항은 삭제한다.
5. 제17조 ④항 행복유치원 운영상 꼭 필요한 핵심 교사(1명)에게는 전보유예 할



수 있음을 신설한다. (2021.3.1. 이후 실적)

6. <표 3> 가산점 평정표 근무실적 4호에서 거점유치원에 교육과정 거점과 통합교육 거점유치원 근무자도 포함하여 6개월마다 0.5점의 가산점을 부여한다. (2021.3.1. 이후 실적, 단, 통합교육거점유치원 근무자는 유치원 특수교사에 한함)
7. <표 3> 가산점 평정표 근무실적 13호에서 2년간 부장교사는 6개월마다 0.5점의 가산점을 부여함을 신설한다. (2021.3.1. 이후 실적)

제3조

본 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2021. 경상남도교육청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기준(유치원, 유치원특수)을 준용한다.

【부 칙】 (2021. 8. 13. 인사위 교육지원과-12637 호)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22년 3월 1일 자 정기 인사부터 적용 · 시행한다.

제2조(시행 예고)

1. <표 1>의 인사급지에서 2022.3.1.부터 물금유치원은 『다』, 회야초등학교 병설 유치원은 『나』 급지로 한다.
2. <표 1>의 인사급지에서 2022.3.1.자 개원 예정인 사송1유치원(가칭)을 2022.3.1.에 『다』 급지로 한다.
3. <표 3> 가산점 평정표에서 근무실적 4호 특수교육지원센터 근무 교사에게 6개 월마다 1.0점의 가산점을 부여함을 신설한다. (2022.3.1. 전보부터 적용)

제3조

본 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2022. 경상남도교육청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기준(유치원, 유치원특수)을 준용한다.

【부 칙】 (2022. 8. 17. 인사위 교육지원과-13377호)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23년 3월 1일 자 정기 인사부터 적용 · 시행한다.

제2조(시행 예고)

1. <표 1>의 인사급지에서 2023.3.1.부터 동면유치원은 『다』 급지로 한다



2. <표 3> 가산점 평정표에서 근무실적 17호 원감 미배치 단설유치원의 원감 업무 대행자(1인만 인정)에게 6개월마다 0.25점 부여를 신설한다. (2023.3.1. 이후 실적부터 적용)

제3조

본 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2024. 경상남도교육청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기준 유치원(보건), 특수(유치원)을 준용한다.

【부 칙】 (2023. 8. 21. 인사위 교육지원과- 14194호)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24년 3월 1일 자 정기 인사부터 적용 · 시행한다.

제2조(시행 예고)

- <표 1>의 인사급지에서 2024.3.1.부터 명동유치원은 『다』 급지로 한다
- <표 3> 가산점 평정표에서 2년간 공립유치원 특수교육대상자의 담임 또는 복지 카드 1~3급 소지 유아의 담임 6개월마다 0.3점 부여를 시행 예고한다. (2026.3.1. 전보부터 적용)

제3조

본 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2024. 경상남도교육청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기준 유치원(보건)을 준용한다.

【부 칙】 (2024. 8. 12. 인사위 교육지원과- 14120호)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25년 3월 1일 자 정기 인사부터 적용 · 시행한다.

제2조(시행 예고)

<표 3> 가산점 평정표에서 자녀가 1명인 교사 0.25점 부여를 시행 예고한다. (2026.3.1. 전보부터 적용)

제3조

본 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2025. 경상남도교육청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기준 유치원(보건)을 준용한다.



【부 칙】 (2025. 8. 12. 인사위 교육지원과-14764호)

제1조(시행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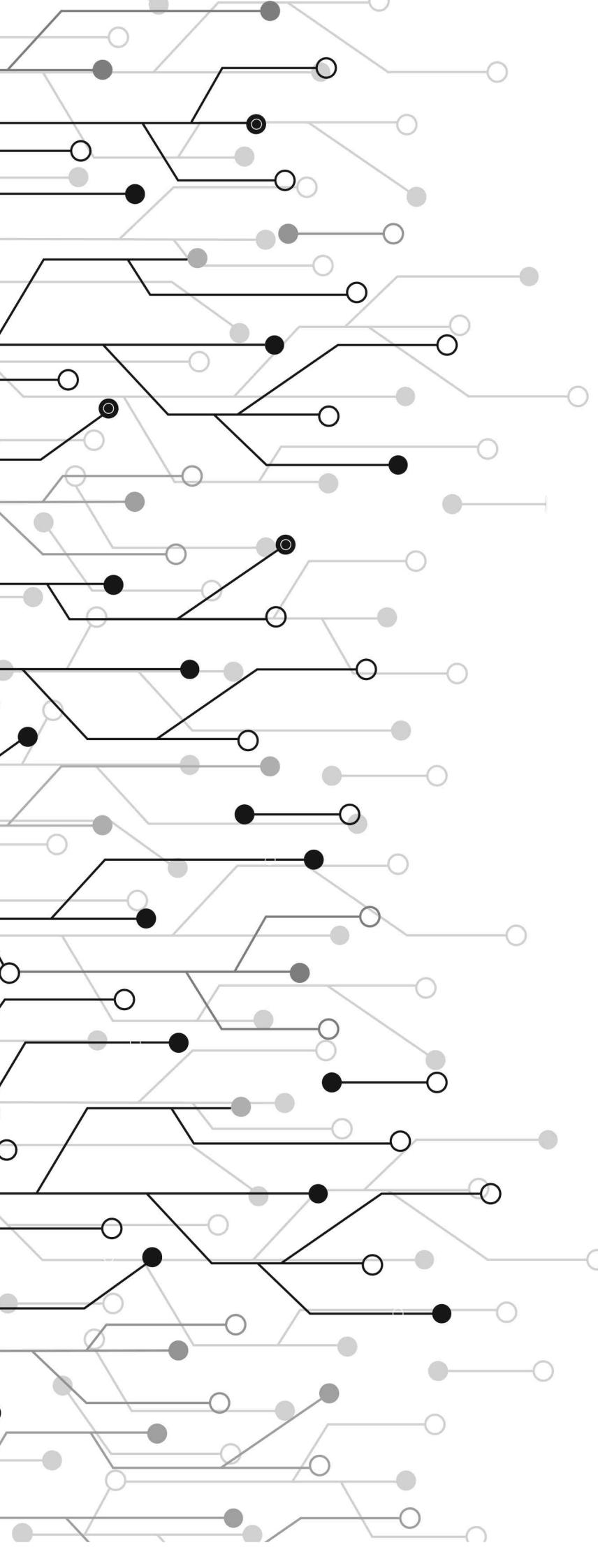
이 기준은 2026년 3월 1일 자 정기 인사부터 적용·시행한다.

제2조(시행 예고)

1. <표 1>, <표 2>의 인사급지에서 2025.3.1.부터 사송초등학교병설유치원, 사송유치원은 「다」 급지로 한다.
2. <표 1>,<표 2>의 인사급지에서 오봉유치원, 양산유치원, 물금유치원은 「나」 급지로 함을 시행 예고한다. (2028.3.1.부터 적용)

제3조

본 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2026. 경상남도교육청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기준 유치원(보건)을 준용한다.



2026학년도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기준

유치원 (특수교사)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교육공무원 인사 관계 제 법규 및 본도 인사관리기준에 의한 유치원 특수교원의 신규 배치 · 전보 · 관외 전입자 배치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경상남도양산교육지원청 유치원 특수학급 교사, 특수교육지원센터 교사 인사에 적용한다.

제3조(정기전보)

정기 전보는 매년 3월 1일과 9월 1일에 실시한다. 단, 교사는 3월 1일에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비정기 전보)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동일 직위 최저 근무연한 이내 일지라도 전보할 수 있다. 다만 5, 6, 7, 8호는 전보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8호는 본인이 요청할 경우, 인사권자 소속 인사위원회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소명할 기회를 부여하고, 10호는 본인의 희망과 전보권자의 승인에 의하며, 3호 해당자로 전보된 자는 2년 이내 전 근무지에 가급적 전보하지 아니한다.

1. 정원의 변경, 승진, 강임의 경우
2. 직위해제 후 복직된 자
3. 징계처분을 받은 자
4. 감사 결과 인사조치 지시된 자
5. 당해 유치원 재직시 3회 이상 징계에 이르지 않는 주의 또는 경고 처분을 받은 자
6.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 성적이 저조한 자. 단, 이 경우 학교(원)장은 전보 요청 전에 당해 교원의 능력개발을 위한 직무연수를 부과하여야 한다.
7.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3 제1항 각호의 사유와 관련하여 징계에 이르지 않은 주의 또는 경고 처분을 받은 자



- 8. 기타 인사 쇄신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 9. 신체,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 요양을 필요로 하는 자
- 10. 교권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 11. 동일 유치원에 근무하는 직계 존·비속 및 부부 교직원 (병설유치원 초등학교 포함)

- ② ①항 2~8호 해당하는 자는 비경합지로 전보한다.
- ③ 원장은 유치원 운영상 전보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직권 내신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충분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비경합지에 내신하여야 한다.

제5조(인사 구역 및 근속 연한)

동일 직위 장기 근무로 인한 침체 방지와 생활근거지 및 희망지 전보로 교직의 안정을 기하기 위하여 <표 1>과 같이 인사 구역 및 근속 연한을 정하여 교원의 순환 전보를 실시한다.

제6조(전보 연한 계산과 가산점 평정)

전보 연한 계산과 경력 및 가산점 평정은 2월 말일, 8월 말일 현재로 하며, 전보 연한의 계산에서 1월 미만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 2 장 신규 교원 배치 및 계약제교원 임용

제7조(신규 교원 배치)

- ① 신규 교사는 본도 교육감이 배정한 자를 대상으로 교육장이 임용한다.
- ② 신규로 임용되는 자는 본시 인사 구역의 『가』 급지 유치원에 배치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하되, 전보서열 명부에 등재된 자가 없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8조(계약제 교원의 임용)

계약제 교원은 같은 학교(급) 특수학교 교원 자격증 소지자를 원장이 임명한다. 단, 희망자가 없을 경우에는 다른 학교급 특수학교 교원 자격증 소지자를 임용할 수 있다. 다만 다른 학교급 특수학교 교원 자격증 소지자의 희망이 없을 경우 유치원 교사 자격증 소지자를 임용할 수 있다.



제 3 장 전 보

제9조(인사 구역 및 근속 연한)

- ① 동일 직위 장기 근무로 인한 침체 방지와 생활근거지 및 희망지 전보로 교직의 안정을 기하기 위하여 <표 1>과 같이 인사급지 및 근속 연한을 정하여 순환 전보를 실시한다.
- ②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근무한 기간은 당해지역 근속 연한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③ 휴직 기간 및 파견된 기간은 당해 유치원 근무 기간에서 제외한다.

<표 1>

인사급지 및 동일 직위 동일 유치원 근속 연한

인사급지		해 당 유 치 원	유치원수	동일유치원 근무연한
구분	급지			
동지역	가	신양	1	5년
	나	북정, 덕계, 중부, 삽량, 회야	5	
	다	양산, 명동유	2	
읍·면지역	가	석산, 가촌	2	5년
	나	양산유, 물금유	2	
	다	동면유, 오봉유, 사송유 <신설 2025.8.12.>	3	
	라	특수교육지원센터	1	
비고	본 기준 시행 이전의 유치원 급지는 급지 조정 이전의 기준에 의한다. ■ 당해 연도 신설 유치원 급지는 “다급지”로 적용한다.			

제10조(순환 및 희망 전보)

- ① 유치원 간의 전보는 <표 1>과 같이 동일유치원 근무기간 1년 이상 5년의 범위 내에서 동일 직위에 근속한 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 ② 익년도 도 인사 구역 급지 간 순환 전보 대상자는 학년도 도중에 관내 전보할 수 없다.
- ③ 부부 교원, 직계 존비속은 동일 학교 및 동일 유치원에 배치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④ 동일유치원 근속 연한 만기자로서 희망유치원에 전입되지 못한 교사는 조정 배치한다.
- ⑤ 파견근무 확정자는 전보하지 아니한다. 다만 만기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1조(전보서열 명부 작성)

- ① 유치원 간 전보에서 경합이 있을 경우에는 경력점, 가산점을 합산하여 전보서열 명부를 작성한다.
- ② 경력점은 최근 4년간의 근속기간 중 <표 1>의 급지에 의거 다음 표와 같이 산출하되 현임교 이전의 경력은 『가』 급지로 간주한다.

인사 구역급지	가	나	다	라
1년간 경력점	6	7	8	9

* 휴직 기간 또는 파견 기간이 경력점 평정 기간 내에 있는 경우, 당해 평정 기간 직전의 실제 근무 기간에서 이월하여 당해 평정 기간에 산입한다. 단, 도 단위 교육행정, 연구, 연수, 수련기관 파견 근무자의 파견 기간은 당해 유치원 근무경력에 산입할 수 있다.

1. 타 시·도 및 타 시·군 전입자의 경력점은 본 시의『가』 급지에 준한다.
2. 경력점의 계산은 최근 4년에 한하여 연 단위로 계산하되, 1년 미만은 월 단위로 계산하고 15일 이상은 1월로 한다.
3. 정원의 변경으로 인해 부득이 전보된 자(우선 전보되지 못한 경우)는 전임유치원의 근무 경력(가산점 포함)을 현임 유치원의 근무 경력(가산점 포함)으로 볼 수 있다.

- ③ 가산점은 <표 3>에 의거 최근 4년간 현임 유치원에서 겨양한 실적과 표창에 한하되 우우 조건을 포함한다. 단, 휴직 기간 또는 파견 기간이 평정 기간 내에 있는 경우, 당해 평정 기간 직전의 실제 근무 기간에서 이월하여 당해 평정에 산입한다. (휴직 기간, 파견 기간 삽입은 2015.3.1. 이후 실적)

<표 3>에 의한 가산점 평정표 중 근무실적의 경력계산은 학년도를 기준으로 6개월 단위로 한다. 단, 정보화 관련 자격(삭제) (2024.3.1. 전보부터 적용) <개정 2021.8.13.> 및 한국사능력 검정 자격은 취득시기와 관련 없이 인정한다.

- ④ 전보서열 명부 작성에 있어서 동점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고 순위자를 결정한다.

1. 현임 유치원 장기 근무자
2. 본시 경력점 상위자
3. 생년월일이 빠른 자

- ⑤ 전보서열 명부는 1년간 유효하며 전보 포기 희망자는 명부에서 삭제한다.

제12조(전보)

- ① 교사의 전보는 전보서열 명부에 의거 고순위자 순으로 전보한다.
- ② 학기 중 휴·폐원, 정원조정으로 인한 교사 과원 발생시 타시군으로 전보 할 수 있다. <신설 2025.8.12.>

“경상남도교육청 2026.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기준 유치원(보건)·특수(유치원)”

제5장 전보 제15조[교사·원감의 전보]

- ③ 학기 중 휴·폐원으로 인한 교사 과원 발생 시 타시군로 전보할 수 있다. <신설 2025.6.23.>

제13조(전입자 배치)

- ① 전입교사의 배치는 가급적 본시 인사 구역 『가』 급지 유치원에 배치하지 아니한다. 다만, 관내 전보 희망자 중 『가』 급지 유치원 희망자가 없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② 타 시·군 전입자의 배치는 본도 전입교사 서열명부에 의거 배치한다.
- ③ 타 시·도 전입자의 배치는 타 시·군 전입자의 배치 후에 배치한다.
- ④ 부부 교원, 직계존비속 교원은 동일 학교 및 동일 유치원에 가급적 배치하지 아니한다.

제14조(전보 우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자는 원장의 요청에 의해 전보권자의 승인으로 희망 유치원에 우선 전보할 수 있다.

1. 직무수행과 관련되는 공적으로 전국 규모 대회에서 국무총리 이상의 상장 또는 지도상 수상자
2. 연구 . 시범유치원 운영상 원장의 요청에 의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3. 단설 설립이나 초등학교의 폐교와 같은 정책상의 문제로 폐원되거나 통폐합되어 과원이 발생한 경우는 전보우선 한다. 단, 전보 우선자 간 경합이 있을 경우는 제11조 ④항의 기준에 의해 고 순위자 순으로 배치한다.
4. **유아** 모집의 어려움으로 인한 휴·폐원, 학급 감축의 경우는 만기자와 같이 전보서열 명부의 고 순위자 순으로 전보한다. <개정 2025.8.12.>
5.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3년 이상 근무한 특수교사

제15조(관외 전보 제청)

관외 전보 제청은 원장의 제청을 받아 본도 인사관리기준에 의거 시행한다.



제16조(전보유예)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본인의 희망과 소속 원장의 요청에 따라 1회에 한하여 전보권자가 1년간 유예할 수 있다.

- ① 도 지정 이상의 연구·시범유치원 근무자로서 진행 중인 연구가 완료되지 아니한 유치원의 연구부장(연구주무) 교사
- ② 정년퇴임 1년 이내인 자
- ③ 다자녀 교원(3자녀 이상) 중 미취학 유아가 있는 교사
- ④ 행복유치원 운영상 꼭 필요한 핵심 교사(1명) (2021.3.1. 이후 실적)

<표 2>

가산점평정표

종별	평 정 대 상	가산점	적용 대상	비 고
표 장	1. 교육감 표창 이상, 훈포장(모범공무원 표창 포함) 2. 유치원 과제해결 및 직접 원아를 지도한 실적이 인정되는 타 부처 장관 표창 (2011.3.1. 이후 실적) 3. 교육장 표창 4. 직속기관장 표창 (2012.3.1. 이후 실적. 단, 현 소속 직속기관과 파견된 직속기관으로부터 받은 표창은 불인정)	1.0 1.0 0.7 0.5	전 교사	4년간 2회 적용 (동일 학년도 중복 경우 택일 적용)
근 무 실 적	1. 교육지원청 지정 이상 연구(시범·실험) 유치원 근무자(6개월마다) <2015.3.1. 이후 실적 0.3> 2. 교육지원청 지정 이상 연구(시범·실험) 초등학교 근무자(6개월마다) <2015.3.1. 이후 실적 0.125> 3. 교육실습 협력유치원 근무자(6개월마다), 원감은 2012.3.1. 이후 실적(6개월마다) (2015.3.1. 이후 0.3) 4. 특수교육지원센터 근무(6개월마다) (2022.3.1. 전보부터 적용)	0.5 0.25 0.5 1.0	전 교사	4년간 누가 적용 (동일 학년도 중복 경우 택일 적용) <신설 2021.8.13.>
	5. 거점(지역·교육과정·통합교육) 유치원 근무자 (6개월마다) (교육과정 및 통합교육과정 유치원 근무자는 2021.3.1. 이후 실적)	0.5	전 교사	4년간 누가 적용 (동일 학년도 중복 경우 택일 적용) <개정 2015.7.22.> <개정 2020.8.14.>
	6. 2년간 단설유치원 근무자 (6개월마다)	0.5	전 교사	
	7. 1년간 신설 유치원 근무자 (2020.3.1. 이후 실적) ○ 6개월마다	0.5	전 교사	<신설 2019.8.13.>
	8. 청렴도 향상에 기여한 자(조사기관에 신고하여 금품수수 10만원 이상, 공금횡령·유용 100만원 이상의 위반 행위 발견에 기여한 경우) (현임교 1회만 인정)	0.5	전 교사	2016.3.1. 이후 실적부터 적용 <개정 2015.7.22.> <개정 2020.8.14.>
	9. 2년간 부장교사(6개월마다) (2021.3.1. 이후 실적)	0.5		<신설 2020.8.14.>
	10. 최근 4년간 파견근무자(6개월마다)	0.25		<신설 2021.8.13.> (2022.3.1. 이후 실적부터)
	11. 원감 미배치 단설유치원의 원감 업무 대행자(1인만 인정) (6개월마다)	0.25		<신설 2022.8.17.> (2023.3.1. 이후 실적부터)



종별	평정대상	가산점	적용대상	비고
연 구 실 적	1. 도 단위 이상 입상자 2. 개인 작품 발표자 및 저서 집필자 (2인 공저 포함) - 2017.2.28. 이전 실적<개정 2016.5.25.> - 2017.3.1. ~ 2020.2.29. 실적 <개정 2019.8.13.>	1.0 0.5 0.2	전 교원	4년간 2회 적용 (동일 학년도 중복 경우 택일 적용) <개정 2021.8.13 > (2024.3.1. 전보부터 적용)
	3. 정부화 관련 자격증 취득자<삭제>			<개정 2021.8.13 >
	4. 영어능력 시험<삭제>			<개정 2021.8.13 >
	5. 수업명사	1.0		취득 후 10년간
	6.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 이상(임용 전 자격취득 포함)	0.3		
	1. 국가유공자와 동 부양자 (배우자, 직접 부양하는 자녀와 그 배우자), 순직한 교육공무원의 배우자, 자녀와 그 배우자 2. 부모(배우자 부모 포함)를 단절 없이 인사당해 학년도 말일 기준으로 1년 이상 연속하여 직접 봉양하고 있는 자 3. 장애인(1년 이상 장애 증명 소지자) 본인 및 배우자, 직계 존비속 중 장애인(장애 증명 소지자)을 인사 당해 학년도 말일 기준으로 1년 이상 연속하여 직접 부양하고 있는 자	1.0 0.5 1.0	전 교원	택일 적용 <2017.8.16.>
우 우 조 건	4. 만 55세 이상 교사	1.0		<신설 2019.8.13.>
	5. 자녀가 3명 이상인 교사 6. 만 2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교원(단, (준)벽지 제외)	1.0 1.0		택일 적용 <개정 2018.8.21.>
	7. 자녀가 2명인 교사 (2022.3.1. 전보부터 적용)	0.5		<신설 2021.8.13.>
	8. 자녀가 1명인 교사 (2026.3.1. 전보부터 적용)			<신설 2024.8.12.>



<표 3>

유치원(특수) 학급, 교사 수(2025.9.1.자) 및 인사급지표

순	유치원 명	특수 학급	교사수		년도별 인사급지					비 고
			특수(정)	특수(기)	2021	2022	2023	2024	2025	
1	가촌	1	1		가	가	가	가	가	'20.3.1. 개원
2	덕계	1	1		나	나	나	나	나	
3	북정	1	1		나	나	나	나	나	
4	삽량	1	1		가	가	가	나	나	'20.3.1. 3학급 증설
5	석산	1	1		가	가	가	가	가	
6	신양	1	1		가	가	가	가	가	
7	양산	1	1		나	나	나	다	다	
8	중부	1	1		가	가	가	나	나	
9	양산유치원	2	1	1	다	다	다	나	나	
10	오봉유치원	1		1	다	다	다	다	다	'19.3.1. 개원
11	물금유치원	2	1	1	다	다	다	나	나	'21.3.1. 개원
12	회야	1	1		다	나	나	나	나	'21.3.1. 개원
13	동면유치원	2	2			다	다	다	다	'22.3.1. 개원
14	명동유치원						다	다	다	'23.3.1. 개원
15	사송유치원	2	1	1					다	'25.3.1. 개원
계			18	14	4					



【부 칙】 (2023. 8. 21. 인사위 교육지원과-14194호)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24년 3월 1일 자 정기 인사부터 적용 · 시행한다.

제2조

본 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2024. 경상남도교육청 교육공무원 인사 관리기준 특수(유치원)을 준용한다.

【부 칙】 (2024. 8. 12. 인사위 교육지원과- 14120호)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25년 3월 1일 자 정기 인사부터 적용 · 시행한다.

제2조(시행 예고)

<표 3> 가산점 평정표에서 자녀가 1명인 교사 0.25점 부여를 시행 예고한다.
(2026.3.1. 전보부터 적용)

제3조

본 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2025. 경상남도교육청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기준 특수(유치원)를 준용한다.

【부 칙】 (2025. 8. 12. 인사위 교육지원과-14764호)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26년 3월 1일 자 정기 인사부터 적용 · 시행한다.

제2조(시행 예고)

<표 1>의 인사급지에서 2025.3.1.부터 사송유치원은 『다』 급지로 한다.

제3조

본 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2026. 경상남도교육청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기준 특수(유치원)를 준용한다.



2026학년도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기준

초등
(보건교사)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교육공무원 인사 관계 제 법규 및 본도 인사관리기준에 의한 보건교사의 신규 배치 · 전보 · 관외 전입자 배치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기준은 경상남도양산교육지원청 보건교사에 적용한다.

제3조(정기 전보)

보건교사의 전보는 매년 3월 1일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비정기 전보)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동일 직위 최저 근무연한 이내일지라도 전 보할 수 있다. 단 제5호, 제6호, 제7호, 제8호는 전보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 고, 제8호는 본인이 요청할 경우 인사권자 소속 인사위원회 소위원회를 구성 하여 소명할 기회를 부여하며, 제9호는 본인의 희망과 전보권자의 승인에 의 하며, 제3호 해당자로 전보된 자는 2년 이내 전 근무지에 가급적 전보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8.16.> <개정 2019.8.13.>

- | | |
|--|---------------------|
| 1. 정원의 변경, 승진, 강임의 경우. | 2. 직위해제 후 복직된 자 |
| 3. 징계처분을 받은 자, | 4. 감사 결과 인사조치 지시된 자 |
| 5. 당해학교 재직 시 3회 이상 징계에 이르지 않는 주의 또는 경고 처분을 받은 자 | |
| 6.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 성적이 저조한 자, 단 이 경우 학교장은 전 보 요청 전에 당해 교원의 능력개발을 위한 직무연수를 부과하여야 한다. | |
| 7. 교육공무원법 제 10조의3 제1항 각호의 사유와 관련하여 징계에 이르지 않 는 주의 또는 경고 처분을 받은 자 | |
| 8. 기타 인사 쇄신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 |
| 9. 교권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 |
| 10. 신체,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 요양을 필요로 하는 자 | |

② ①항 제2호~제8호에 해당자는 비경합지로 전보한다.



- ③ 학교장이 운영상 필요할 경우 직권 내신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충분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비경합지로 내신하여야 한다.

제5조(전보 연한 계산과 가산점 평정)

전보 연한 계산과 경력 및 가산점 평정은 정기 전보일 전일로 하며, 전보 연한의 계산에서 1월 미만은 삽입하지 아니한다. 단, 학기 도중에 전보가 불가피할 시에는 전보일 현재로 한다.

제 2 장 신규 교사 및 계약제 교원 임용

제6조(신규교사 배치 및 임용)

- ① 신규 보건교사는 교육감이 배정한 자를 대상으로 교육장이 임용한다.
- ② 신규로 임용되는 자는 본 교육지원청 인사 구역의 『가』 급지 학교에 배치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하되, 전보서열 명부에 등재된 자가 없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7조(계약제 교원의 임용)

계약제 보건교사는 보건교사 자격증 소지자를 학교장이 임용한다.

제 3 장 보건교사 전보

제8조(인사 구역 및 근무연한)

- ① 동일 직위 장기 근무로 인한 침체 방지와 생활근거지 및 희망지 전보로 교직의 안정을 기하기 위하여 <표1>과 같이 인사 구역 및 근무연한을 정하여 순환 전보를 실시한다.
- ② <삭제> <2024.3.1.자 전보부터 삭제 2023.8.21.>

제9조(정기 및 희망 전보)

- ① 학교 간의 전보는 <표1>과 같이 동일 학교 근무 1년 이상 5년의 범위 내에서 동일 직위에 근무한 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 ② 본 교육지원청 『가』 급지 학교 근무연한 만기자는 ‘하위’ 급지에 전보한다.
- ③ 익년도 도 인사 구역 급지 간 순환 전보 대상자는 학년도 도중에 관내 전보할 수 없다.
- ④ 정년퇴직 1년 이내인 자는 본인의 희망과 소속 학교장의 요청에 따라 1년간 유예할 수 있다.

<표 1>

2025. 인사 구역 및 동일교 근속 연한 <개정2025.8.12.>

인사 구역		해 당 학 교	학교수	동일교 근속연한
구분	급지			
동 지 역	가	북정, 삼성, 서창, 어곡, 신기, 양산, 양주	7	5년
	나	덕계, 백동, 신명, 신양, 중부, 천성, 삽량, 평산	8	
	다	옹상, 대운	2	
	라	회야	1	
읍 면 지 역	가	범어, 상북, 소토, 영천, 오봉, 용연, 원동, 좌삼, 하북, 화제	10	
	나	동산, 물금, 서남, 금송, 사송	5	
	다	금오, 동면, 성산, 신주	4	
	라	가남, 가양, 가촌, 석산, 증산, 황산	6	
비고	○ 본 기준 시행 이전의 학교 급지는 급지 조정 이전의 기준에 의한다.			

- ⑤ 동일교 근무연한 만기자의 전보 시 전보 희망자가 없을 경우에는 본인의 희망과 학교장의 내신에 의하여 전보권자가 1년간 유예할 수 있다.
- ⑥ 파견근무 확정자는 전보하지 아니한다. 다만, 만기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6.8.16.> <개정 2017.8.21.>

제10조(전보서열 명부 작성)

- ① 보건교사의 학교 간 전보에서 경합이 있을 경우에는 경력점, 가산점을 합산하여 전입 교별로 남, 여를 통합하여 전보 서열명부를 작성한다. <개정 2017.8.21.>



② 경력점은 최근 4년간의 근무 기간 중 <표1>의 급지에 의거 다음의 <표2>와 같이 산출하되 현임교 이전의 경력은 『가』 급지로 간주한다.

- | |
|---|
| 1. 근무 기간 중 휴직 및 파견 근무 기간은 제외한다. 다만, 공상 휴직의 경우는 근무 기간에 포함한다. |
| ※ 휴직 기간 또는 파견 기간이 경력점 평정 기간 내에 있는 경우, 당해 평정 기간 직전의 실제 근무 기간에서 이월하여 당해 평정 기간에 산입한다. 단, 도 단위 교육행정, 연구, 연수, 수련기관 파견 근무자의 파견 기간은 당해학교 근무 경력으로 산입할 수 있다. (도 단위 파견 기간 산입은 2015.3.1. 이후 실적)<개정 2014.11.27. |
| 2. 타 시.도 및 타 시.군 전입자의 전입지 인사 구역 급지 경력점은 본 시의『가』 급지에 준하고 초과 경력은 인정하지 않는다. |
| 3. 경력점의 경력계산은 학년도 기준으로 하되, 1년 미만은 월 단위로 계산하고, 15일 이상은 1월로 한다. (경력점 환산은 본시 초등인사 관리 기준에 의한다) |

<표 2>

1년간 경력점 산출표

경력점 \ 급지	가	나	다	라
1년간	6	7	8	9

③ 가산점은 <표4>에 의거 최근 4년간 현임교에서 거양한 실적과 표창에 한한다. 단, 휴직 기간 또는 파견 기간이 평정 기간 내에 있는 경우, 당해 평정 기간 직전의 실제 근무 기간에서 이월하여 당해 평정에 산입한다(휴직 기간, 파견 기간 삽입은 2015.3.1. 이후 실적, 도서벽지학교와 준벽지학교 전보 희망자는 제외). <개정 2014.11.27.> 정보화 관련 자격 및 한국사 능력검정 자격은 취득시기와 관계없이 인정하고, <표 4>에 의한 가산점 평정표 중 근무 실적의 경력계산은 학년도 기준으로 하되 6개월 이상은 1년으로 하고, 6개월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7.22.>

④ 전보서열 명부 작성에 있어서 동점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선 순위자를 결정한다. <개정 2017.8.21.>

- | | | |
|----------------|-------------|---------------|
| 1. 현임교 장기 근무자, | 2. 경력점 상위자, | 3. 생년월일 선 순위자 |
|----------------|-------------|---------------|

⑤ 전보서열 명부는 1년간 유효하며 전보 포기 희망자는 명부에서 삭제한다.

제11조(전보)

보건교사의 전보는 전보서열 명부에 의거, 선 순위 순으로 전보한다.

제12조(전입자 배치)

전입교사의 배치는 본시 인사 구역 『가』 급지 학교에 배치하지 아니한다. 단, 후속 서열이 없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3조(전보 우선)

- ① 직무수행과 관련되는 공적으로 전국 규모 대회에서 국무총리 이상의 상장 또는 지도상 수상자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전보서열 명부에 구애됨이 없이 우선 전보할 수 있다.
- ② 정원의 변경으로 인한 과원 시는 우선 전보할 수 있다. 단, 과원 시 희망자가 없을 시는 제10조 ④항에 의하여 선 순위자를 결정하여 전보한다.



<표 4>

가산점 평정표

종별	평 정 대 상	가산점	비 고
표창	1. 교육감 표창 (모범공무원 표창 포함) 이상 2. 타 부처 장관 (학생지도 및 학교 과제해결에 한함) 3. 교육장 표창	1.0 1.0 0.7	4년간 2회 적용 (동일 학년도 중복 일 경우 택일 적용) <개정 2014.11.27.›
근무 실적	1. 도 단위 이상 지정 연구·실험·시범학교 근무자(1년마다) <2015.3.1. 이전 실적 1.0> <개정 2020.8.14.> 2. 도 단위 이상에서 시상한 우수학교 근무자(1년마다) 3. 최근 4년간 도서벽지학교 근무자(1년마다) 4. 최근 4년간 특수학교 근무자(1년마다) 5. 교육방송·평생(사회)교육·부진아지도·기초학력책임지도 · 다문화가정자녀교육 지역중심학교 단, 기초학력책임지도 · 다문화가정자녀교육 지역중심학교는 2009.3.1. 실적부터 적용(1년마다) <2015.2.28. 이전 실적> 6. 2년간 보건교사 미 배치교 순회 근무자(99년부터 6개월마다) 7. 대규모학교 근무실적 ◦ 40학급 이상 학교 근무자(05년부터 6개월마다) ◦ 36학급 이상 학교 근무자 <2015.3.1. 이후 근무실적, 6개월마다> ◦ 36학급 이상, 42학급 이하 근무자 가산점 ◦ 43학급 이상 근무자 가산점 - 2016.3.1. 이후 근무실적 (6개월마다, 2년간)<개정 2015.7.22.> - 2020.3.1. 이후 근무실적 (6개월마다, 2년간)<개정 2019.8.13.>	0.5 0.5 1.0 0.5 0.25 0.5 0.5 0.5 0.5 0.5 0.5 0.5 0.75 1.0	4년간 누가적용 (1-7호 동일 학년도 중복일 경우 택일 적용) <개정 2014.11.27.› ※7호는 2019.3.1. 이후 실적부터 중복 가능 <개정 2018.8.13.›
	8. 청렴도 향상에 기여한 자 (금품수수 10만원 이상, 공금횡령·유용 100만원 이상 신고) (현임교 1회만 인정) <신설 2015.7.22.>	0.5	2016.3.1. 실적 부터 적용



종별	평정대상	기산점	비고
연구 실적	1. 전국 단위 입상자 2. 도 단위 입상자 3. 개인 작품 발표자(2인 이내 저서 발표자 포함) - 2017.2.28. 이전 실적 - 2017.3.1.~2020.2.29. 실적 <개정 2016.8.16.> <개정 2019.8.13.>	1.0 0.5 0.5 0.2	4년간 누가 적용 (동일 학년도 중복일 경우 택일 적용)
	4. 정보화 관련 자격증 취득자(임용전 자격취득 포함) 1) 기술사, 기사(1,2급), 기능장, 기능사(1,2급) 2) 워드프로세서(1,2,3급, 단일등급), 컴퓨터활용능력(1,2,3급) 3) 교원 정보활용능력 인증 자격증 취득자	0.3	택일 적용
	5. 영어 능력 시험(유효기간 이내) 1) TOEFL 시험성적 PBT 503 이상, CBT 177 이상, IBT 62 이상 2) TOEIC 시험성적 595 이상 3) TEPS(만점 990점) 시험성적 498 이상, TEPS(만점 600점) 시험성적 267 이상 4) 영어 말하기 능력 인증 취득자(경상남도교육감 인증) 5) ESPT 일반 3급 이상(2019.3.1. 이후 실적)	0.3	해당 교원 <개정 2018.8.13.> <개정 2019.8.13.>
	6.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 이상(임용 전 자격취득 포함)	0.3	
	1. 국가유공자와 동 부양자(배우자와 직접 부양하는 자녀와 자녀의 배우자), 순직한 교육공무원의 배우자와 자녀 및 자녀의 배우자 2. 부모(배우자 부모 포함)를 인사 당해 학년도 말일 기준으로 1년 이상 연속하여 직접 봉양하고 있는 자 3. 장애인(1년 이상 장애 증명 소지자) 본인 및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중 장애인(장애 증명 소지자)을 인사 당해 학년도 말일 기준으로 1년 이상 연속하여 직접 부양하고 있는 자	1.0 0.5 1.0	택일 적용 4항의 장애인을 부양하는 자의 배우자는 2016.3.1. 이후 실적부터 적용 <개정 2015.7.22.> <개정 2017.8.21.>
우우 조건	4. 만 55세 이상의 교사	0.5	<개정 2019.8.13.>
	5. 자녀가 3명 이상인 교사	1.0	택일 적용
	6. 자녀가 2명인 교사(2023.3.1.자 전보부터 적용)	0.5	<개정 2022.8.17.>
	7. 만 2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교원	1.0	<개정 2018.8.13.>



<표 5>

보건교사 연도별 인사급지표(2025.9.1.기준)

순	학교명	보건교사 배치 수	연도별 급지					비 고
			2022	2023	2024	2025	2026	
1	가남	1	다	다	라	라	라	
2	가양	2	다	다	라	라	라	
3	가촌	1	라	라	라	라	라	
4	금송	1				나	나	2025.3.1.개교
5	금오	1	나	나	다	다	다	
6	대운	1	라	라	라	라	다	
7	덕계	1	나	나	나	나	나	
8	동면	1	가	가	나	나	다	2022.9.1.개교
9	동산	1	가	나	나	나	나	
10	물금	1	나	나	나	나	나	
11	백동	1	라	라	나	나	나	
12	범어	1	가	가	가	가	가	
13	북정	1	가	가	가	가	가	
14	사송	1			나	나	나	2024.9.1.개교
15	삼성	1	나	나	가	가	가	
16	삽량	1	라	라	다	다	나	
17	상북	1	나	나	가	가	가	
18	서남	1	가	가	나	나	나	
19	서창	1	다	다	가	가	가	
20	석산	2	나	나	라	라	라	
21	성산	1	다	다	라	라	다	
22	소토	1	나	나	가	가	가	
23	신기	1	나	나	나	나	가	
24	신명	1	다	다	나	나	나	
25	신양	1	다	다	나	나	나	
26	신주	1	나	나	라	라	다	
27	양산	1	나	나	나	나	가	
28	양주	1	가	가	나	나	가	
29	어곡	1	다	다	가	가	가	
30	영천		나	나	가	가	가	미배치
31	오봉	1	나	나	가	가	가	
32	용연		다	다	가	가	가	미배치
33	웅상	1	가	가	다	다	다	
34	원동		라	라	가	가	가	미배치
35	좌삼		라	라	가	가	가	미배치
36	중부	1	다	다	나	나	나	
37	증산	2	라	라	라	라	라	
38	천성	1	나	나	나	나	나	
39	평산	1	나	나	다	다	나	
40	하북	1	라	라	가	가	가	
41	화제	1	라	라	가	가	가	
42	황산	1	다	다	라	라	라	
43	회야	1	나	나	다	다	라	
계		42						

【부 칙】 (2008. 12. 23. 인사위 교육과-35518호)

제1조(시행일)

이 인사관리기준은 2009년 3월 1일 자 정기인 사부터 적용 시행한다.

【부 칙】 (2009. 12. 24. 인사위 교육과-41257호)

제1조(시행일)

이 인사관리기준은 2010년 3월 1일 자 정기 인사부터 적용 시행한다.

【부 칙】 (2011. 1. 11. 인사위 교수학습지원과-477호)

제1조(시행일)

이 인사관리기준은 2011년 3월 1일 자 정기 인사부터 적용 시행한다.

제2조(시행안 예고)

- ① <표 4>의 가산점 근무실적 6. 2년간 순회 근무 교사(99년부터 6개월마다) 0.5점, 7. 40학급 이상 학교 근무자(05년부터 6개월마다) 0.5점을 근무실적 1~5항과 분리·적용한다(2011학년도 실적부터 적용).

【부 칙】 (2012. 1. 5. 인사위 교육지원과-229호)

제1조(시행일)

이 인사관리기준은 2012년 3월 1일 자 정기 인사부터 적용 시행한다.

【부 칙】 (2012. 12. 17. 인사위 교육지원과-41505호)

제1조(시행일)

이 인사관리기준은 2013년 3월 1일 자 정기 인사부터 적용 시행한다.

【부 칙】 (2013. 12. 31. 인사위 교육지원과-23524호)

제1조(시행일)

이 인사관리기준은 2014년 3월 1일 자 정기 인사부터 적용 시행한다.



【부 칙】 (2014. 11. 27. 인사위 교육지원과-27729호)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5년 3월 1일 자 정기 인사부터 적용 · 시행한다.

1. 본 기준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경상남도교육청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기준을 준용한다.
2. 기타 인사관련 현안은 인사협의회를 통하여 결정한다.

제2조(시행안 예고)

2015학년도 인사관리기준 중 아래 내용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함을 예고한다.

1. <표 1> 인사 구역에서 삽량초등학교를 『다』 급지에서 2016.3.1.부터 『라』 급지로 한다.
2. <표 1> 인사 구역에서 성산초등학교를 『나』 급지에서 2016.3.1.부터 『다』 급지로 한다.
3. <표 1> 인사 구역에서 황산초등학교를 『나』 급지에서 2016.3.1.부터 『다』 급지로 한다.
4. <표 1> 인사 구역에서 동산초등학교를 『나』 급지에서 2016.3.1.부터 『가』 급지로 한다.
5. <표 1> 인사 구역에서 상북초등학교를 『다』 급지에서 2016.3.1.부터 『나』 급지로 한다.
6. <표 4> 가산점 평정표에서 근무실적 7호는 36학급 이상 학교 근무자에게 6 개월마다 0.5점을 부과한다. <2015.3.1. 이후 근무실적>
7. <표 4> 가산점 평정표의 표창은 아래와 같이 개정 시행한다.

종별	평 정 대 상	기산점	비 고
표창	1. 교육감 표창 (모범공무원 표창 포함) 이상 2. 타 부처 장관 (학생지도 및 학교 과제해결에 한함) 3. 교육장 표창	1.0 1.0 0.7	4년간 2회 적용 (동일 학년도 중복 경우 택일 적용, 2015.3.1. 이후) <개정 2014.11.27.>

【부 칙】 (2015. 7. 22. 인사위 교육지원과-18958호)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6년 3월 1일 자 정기 인사부터 적용 · 시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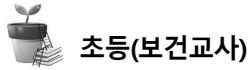
제2조(시행안 예고)

1. <표 4> 가산점 평정표의 근무실적은 아래와 같이 개정 시행한다.

종별	평 정 대 상	기산점	비 고
근무실적	7. ① 36학급 이상, 42학급 이하 근무자 가산점 ② 43학급 이상 근무자 가산점 - 2016.3.1. 이후 근무실적 (6개월마다, 2년간) <개정 2015.7.22.>	0.5 0.75	

제3조

본 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2016 경상남도교육청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기준을 준용한다.



【부 칙】 (2016. 8. 16. 인사위 교육지원과-21761호)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7년 3월 1일 자 정기 인사부터 적용 · 시행한다.

제2조

본 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2017 경상남도교육청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기준을 준용한다.

【부 칙】 (2017. 8. 21. 인사위 교육지원과-18116호)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8년 3월 1일 자 정기 인사부터 적용 · 시행한다.

제2조

본 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2018 경상남도교육청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기준을 준용한다.

【부 칙】 (2018. 8. 13. 인사위 교육지원과-11125호)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9년 3월 1일 자 정기 인사부터 적용 · 시행한다.

제2조

본 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2019 경상남도교육청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기준을 준용한다.

【부 칙】 (2019. 8. 13. 인사위 교육지원과-11430호)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20년 3월 1일 자 정기 인사부터 적용 · 시행한다.

제2조

본 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2020 경상남도교육청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기준을 준용한다.

【부 칙】 (2020. 8. 14. 인사위 교육지원과-11338호)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21년 3월 1일 자 정기 인사부터 적용 · 시행한다.

제2조

본 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2021 경상남도교육청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기준을 준용한다.



【부 칙】 (2021. 8. 13. 인사위 교육지원과-12637호)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22년 3월 1일 자 정기 인사부터 적용 · 시행한다.

제2조

본 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2022 경상남도교육청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기준을 준용한다.

【부 칙】 (2022. 8. 17. 인사위 교육지원과-14073호)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23년 3월 1일 자 정기 인사부터 적용 · 시행한다.

제2조

본 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2023 경상남도교육청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기준을 준용한다.

【부 칙】 (2023. 8. 21. 인사위원회 교육지원과-14195)

제1조 (시행일)

이 기준은 2024. 3. 1.자 정기 인사부터 적용·시행한다.

제2조 (시행 예고)

1. <표 1> 2023. 인사 구역 및 동일교 근속 연한 비고란의 《『가』 급지 학교 간의 근무연한은 통산한다. (동 지역, 읍 · 면 지역의 『가』 급지 근무자도 통산한다.)》는 내용을 삭제한다.
2. <표 5> 보건교사 연도별 인사급지표를 2025.3.1.자 정기 인사부터 적용·시행한다.

제3조

본 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2023 경상남도교육청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기준을 준용한다.

【부 칙】 (2024. 8. 19. 인사위 교육지원과-14120호)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25년 3월 1일 자 정기 인사부터 적용 · 시행한다.

제2조

본 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2025 경상남도교육청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기준을 준용한다.



【부 칙】 (2025. 8. 12. 인사위 교육지원과-14764호)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26년 3월 1일 자 정기 인사부터 적용·시행한다.

제2조

본 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2026년 경상남도교육청 교육공무원 인사 관리기준을 준용한다.



2026학년도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기준

초 · 중등 (영양교사)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경상남도교육청 교육공무원(영양교사) 인사 관계 제 법규에 의한 영양교사의 신규 임용, 전보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 ① 이 기준은 본 교육지원청 인사지역 내(이하 '관내'라 함) 초·중등 및 특수학교에 근무하는 영양교사에 적용한다.
- ② 인사 구역은 양산시(동), 양산시(읍/면) 2개 구역으로 정한다.
- ③ 관내 1·2·3식 급식학교 간의 순환 전보가 될 수 있도록 한다.
- ④ 관내 초·중등 및 특수학교의 영양교사 전보는 통합하여 2016년 3월 1일부터 교육장이 시행한다. (단, 2008년 3월 1일자 초·중등 임용자는 제외하되 희망자는 포함) <개정 2016.8.16.>

제3조(전보의 시기)

정기 전보는 매년 3월 1일 자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비정기 전보)

-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동일 직위 최저 근무연한 이내 일자라도 전보할 수 있다. 단, 제5호, 제6호, 제7호, 제8호는 전보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제8호는 본인이 요청할 경우 인사권자 소속 인사위원회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소명할 기회를 부여하며, 제9호는 본인의 희망과 전보권자의 승인에 의하며, 제3호 해당자로 전보된 자는 2년 이내 전 근무지에 가급적 전보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8.16.> <개정 2019.8.13.>

- | |
|-----------------------|
| 1. 정원의 변경, 승진, 강임의 경우 |
| 2. 직위 해제 후 복직된 자 |



3. 징계처분을 받은 자
4. 감사 결과 인사조치 지시된 자
5. 당해 학교에 재직 시 3회 이상 징계에 이르지 않는 주의 또는 경고 처분을 받은 자
6.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저조한 자. 단, 이 경우 학교장은 전보 요청 전에 당해 교원의 능력개발을 위한 직무연수를 부과하여야 한다.
7. 교육공무원법 제 10조의3 제1항 각호의 사유와 관련하여 징계에 이르지 않는 주의 또는 경고 처분을 받은 자
8. 기타 인사 쇄신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9. 교권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10. 신체,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 요양을 필요로 하는 자

- ② ①항 제2호~제8호 해당자는 비경합지로 전보한다.
- ③ 학교장은 학교 운영상 교원의 전보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직권 내신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충분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비경합지에 내신하여야 한다.

제5조(인사 구역 및 근속 연한)

① 관내 인사 구역의 장기 근무로 인한 침체 방지와 생활근거지 및 희망지 전보로 교직의 안정을 기하기 위하여, <표 1>과 같이 인사급지, 인사 구역 및 근무연한을 정하여 순환 전보를 실시한다. 이 경우 현 근무급지의 근무연한(이하 ‘급지 만기’라 함)을 초과할 수 없다. <근무연한 적용 기준 : 현 인사 구역 임용일>

1. 양산시(동) 인사 구역은 근무연한을 근속 10년으로 한다.
2. 양산시(읍/면) 인사 구역은 근무연한을 근속 12년으로 한다.

② 1일 2식 및 3식을 급식하는 학교의 근무연한은 2년으로 하고 당해 급지에서 1회에 한하여 근무할 수 있다. 단,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동일교에서 2년간 전보 유예가 가능하고, 당해 급지에서 2회 이상 근무할 수 있다. <신설 2019.8.13.>

③ 1일 2식 및 3식을 급식하는 학교의 영양교사 근무 기간은 1회(**최대 4년, 동일교 근무실적에 한함**)에 한하여 당해 급지의 통산 연한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20.3.1. 이후 실적부터) <개정 2011.1.31.> <개정 2019.8.13.> <개정 2021.8.13.> **<개정 2025.8.12.>**

1. 1일 3식 학교 근무자 급지 통산 연한 미산입 2010.3.1. 이후 실적부터
2. 1일 2식 학교 근무자 급지 통산 연한 미산입 2012.3.1. 이후 실적부터



<표 1>

2025. 인사 구역 및 근속 연한

인사 지역	급지 (점)	대상학교				근속연한	
		초	중	고	특수	동일교	지역
양산시 (동)	가(6점)	신기초, 양주초 양산초, 삼성초	양산중, 삼성중			4년 (2식, 3식 학교: 2년)	10년
	나(7점)	어곡초, 중부초 신양초, 천성초 평산초, 덕계초 회야초	웅상중				
	다(8점)	웅상초, 백동초 서창초	서창중				
	라(9점)			서창고(2) 양산고(3)2명 웅상고(2)			
	소계	14개교	4개교	3개교			
양산시 (읍/면)	가(6점)	범어초, 동산초 서남초, 화제초	범어중, 증산중			4년 (2식, 3식 학교: 2년)	12년
	나(7점)	신주초, 황산초 가양초, 가촌초 금오초, 동면초 사송초, 금송초	신주중, 물금중 금오중, 사송중 금송중				
	다(8점)	상북초, 가남초 하북초, 원동초 석산초			양산 희망		
	라(9점)			물금고(2) 증산고(2)			
	소계	17개교	7개교	2개교	1개교		
	합계	31개교	11개교	3개교	1개교		
비고	◦ 본 기준 시행 이전의 학교 급지는 급지 조정 이전의 기준에 의한다.						

제6조(전보 연한 계산과 경력 및 가산점 평정)

전보 연한 계산과 경력 및 가산점 평정은 정기 전보일 전일로 하며, 전보 연한의 계산에서 1월 미만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10.24.>

제 2 장 신규 영양교사의 배정과 임용**제7조(신규 영양교사의 배정과 임용)**

영양교사의 신규 임용은 교육감이 배정한 자를 대상으로 교육장이 임용한다.



제8조(배치)

신규로 임용되는 자는 관내 전보 희망자를 우선 전보한 후에 배치한다. 단, 전입 희망자가 정원 충원에 미달하거나 학기 도중 결원 보충 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 3 장 영양교사 전보

제9조(정기 전보)

- ① 정기 전보는 동일교 근무연한은 4년(단, 2식, 3식 학교 근무연한은 2년)으로 하고, 현임 교 1년 이상 근무한 자를 대상으로 본인의 희망과 학교장의 내신에 의하여 실시한다.
- ② 유예자는 다음 순위에 따라 전보한다. <신설 2016.8.16.> <개정 2017.8.21.>

- | |
|----------------------------|
| 1. 유예년수가 오래된 자 |
| 2. 경력점, 가산점을 합산하여 점수가 낮은 자 |
| 3. 생년월일이 늦은 자 |

- ③ 파견근무 확정자는 전보하지 아니한다. 다만, 만기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6.8.16.> <개정 2017.8.21.>

제10조(전보 서열 명부 작성)

- ① 영양교사의 전보에서 경합이 있을 경우에는 경력점, 가산점을 합산하여 초·중·고·특수학교 구분 없이 인사 구역별(학교별)로 통합 전보서열 명부를 작성하여 선 순위 순으로 전보한다. <개정 2017.8.21.>
- ② 경력점은 최근 4년간 근무 기간 중, <표 1>의 급지에 의거 다음 표와 같이 산출한다. 관외(타 시·도 전입자 포함) 전입자의 전임지 인사 구역 급지 경력점은 ‘가’급지에 준하고, 초과 경력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교육전문직으로 근무한 기간은 인사 구역 “라”급지 경력점을 부여한다. <신설 2024.8.12.>

경력점	급 지	가	나	다	라
1년간		6	7	8	9

※ 휴직 기간 또는 파견 기간이 경력점 평정 기간 내에 있는 경우, 당해 평정 기간 직전의 실제 근무 기간에서 이월하여 당해 평정 기간에 산입한다. 단, 도 단위



교육행정, 연구, 연수, 수련기관 파견 근무자의 파견 기간은 당해 학교 근무 경력으로 산입할 수 있다. (2017.3.1. 이후 휴직, 파견자부터 적용) <개정 2016.8.16.>

- ③ 인사 구역 급지에 대한 경력점은 최근 4년에 한하여 연 단위로 계산하되 1년 미만은 월 단위로 계산하고 15일 이상은 1월로 한다.
- ④ 가산점은 <표 2>에 의거 최근 4년간 현임교(누가 실적)에서 거양한 표창과 실적 그리고 우우 조건을 대상으로 한다. 단, 휴직 기간 또는 파견 기간이 평정 기간 내에 있는 경우, 당해 평정 기간 직전의 실제 근무 기간에서 이월하여 당해 평정에 산입한다. (2017.3.1. 이후 휴직, 파견자부터 적용) <개정 2016.8.16.>
- ⑤ 전보서열 명부 작성에 있어서 동점자는 다음 순위에 의하여 결정한다. <개정 2017.8.21.>

- | | |
|-------------------------|---------------|
| 1. 1일 3식, 2식 학교 장기 근무자, | 2. 현임교 장기 근무자 |
| 3. 학교 급지에 대한 경력점 상위자, | 4. 생년월일이 빠른자 |

- ⑥ 전보서열 명부는 1년간 유효하며, 도중에 타 시·도, 관외 전보된 자는 명부에서 삭제한다.

제11조(전보의 특례)

영양교사 정원이 감축된 경우는 근무연한에 관계없이 다음 순위에 의하여 우선 전보할 수 있다. <개정 2016.8.16.>

- | |
|----------------------|
| 1. 전보 내신자 중 총점이 높은 자 |
| 2. 현임교 장기 근무자 |
| 3. 생년월일이 빠른 자 |

제12조(전보의 유예)

- ① 학교 근무연한이 만기된 자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사에 대하여 본인의 희망과 소속 학교장의 요청에 따라 전보권자가 1년간 유예할 수 있다.
<신설 2016.8.16.>

- | |
|---|
| 1. 체육, 보건, 급식에 관한 연구·시범·실험학교 주무교사로서 연구가 완료되지 아니한 학교의 영양교사 |
| 2. 정년퇴직 1년 이내인 자 |

- ② 학교만기자가 관내 전보대상자가 없어 전보가 불가능할 경우 유예할 수 있다.
<개정 2016.8.16.>



<표 2> 가산점 평정표

종별 표 창	평정대상	기산점	비고
	1. 교육감 표창 이상 (타 부처 장관 표창 포함), 훈포장(모범공무원 표창 포함) 2. 교육장 표창 3. 직속기관장 표창(2010.3.1. 이후 실적) 4. 교육감상, 타 부처 장관상(2021.3.1. 이후 실적부터)	1.0 0.7 0.7 0.5	<개정 2021.8.13.> 최근 4년간 현임교 누가 실적(동일 학년도 중복일 경우 택일 적용) <개정 2021.8.13.>
	1. 1일 3식 학교 근무자(1개월마다) 2. 1일 2식 학교 근무자(1개월마다) - 2025.2.28. 이전 실적 - 2025.3.1. 이후 실적부터 <개정 2024.8.12.> 3. 순회(겸무) 교사(6개월마다) (분교순회근무 포함) - 2018.2.28. 이전 실적 2년간 적용 - 2018.3.1. 이후 실적 4년간 적용	0.25 0.125 0.2 0.5 0.5	최근 4년간 현임교 누가 실적 <개정 2017.8.21.> <개정 2018.8.13.> <개정 2025.8.12.>
근 무 실 적	4. 도서·벽지학교 근무자 (6개월마다) 5. 도 단위 이상에서 시상한 우수학교 근무자 (6개월마다) 6. 도 단위 이상 지정 연구(실험·시범학교 및 교육실습학교) 근무자 (6개월마다) 7. 2년간 순회(겸무) 교사(6개월마다, 2018.2.28.까지 실적) ※ 분교 순회 근무 포함 8. 2년간 공동급식학교(조리교) 근무자 (6개월마다) (2010.3.1. 이후 실적) ※ 2021.3.1. 전보부터 <u>4년간</u> 실적 적용 <개정2025.8.12.>	0.5 0.5 0.5 0.5 0.15	최근 4년간 현임교 누가 실적(동일 학년도 중복일 경우 택일 적용)
	9. 교육방송·평생(사회)교육, 기초학력책임지도, 다문화가정자녀교육, 교 육과정운영 지역중심학교, 지역교육청 지정 협력학교 근무자 (2011.3.1. 이후 실적부터 2017.2.28.까지 실적) 10. 2년간 대규모학교 근무실적(6개월마다) ○ 36학급 이상, 42학급 이하 근무자(2018.3.1. 이후 실적) - 2018.3.1.~2025.2.28. 실적 - 2025.3.1. 이후 실적부터 <개정 2024.8.12.> ○ 43학급 이상 근무자(2018.3.1. 이후 실적) - 2018.3.1.~2025.2.28. 실적 - 2025.3.1. 이후 실적부터 <개정 2024.8.12.> ※ 학급수에 병설유치원 학급수 포함(2022.3.1. 이후 실적부터)	0.125 0.5 0.75 0.75 1.0 0.5	<개정 2017.8.21.> <개정 2018.8.13.> <신설 2017.8.21.> <개정 2021.8.13.>
	11. 청렴도 향상에 기여한 자 (조사기관에 신고하여 금품수수 10만원 이상, 공금횡령·유용 100만원 이상 위반 행위 발견에 기여한 경우) (현임교 1회만 인정, 2016.3.1. 실적부터 적용) 12. 경상남도교육청 및 직속기관 파견근무 (6개월마다) (2021.3.1. 이후 실적부터 적용)	0.5 0.5	해당교원 <신설 2015.7.22.> <개정 2021.8.13.> <신설 2021.8.13.>



종별	평정대상	기준점	비고
연 구 실 적	1. 전국 단위 입상자 2. 도 단위 입상자 3. 개인 작품 발표자(2인 이내 저서 발표자 포함) - 2017.2.28. 이전 실적 - 2017.3.1. ~ 2020.2.29. 실적 <개정 2016.8.16.> <개정 2019.8.13.>	1.0 0.5 0.5 0.2	최근 4년간 현임교 누가 실제(동일 학년도 중복일 경우 택일 적용)
	4. 정보화 관련 자격증 취득자(임용 전 자격취득 포함) ◦ 기술사, 기사(1,2급), 기능장, 기능사(1,2급) ◦ 워드프로세서(1,2,3급), 워드프로세서 단일 등급, 컴퓨터활용 능력(1,2,3급) ◦ 교원 정보활용능력 인증서 취득자	0.3	택일 적용
	5. 영어능력 시험(유효 기간 이내) ◦ TOEFL 시험성적 CBT 177, IBT 62 이상 ◦ TOEIC 시험성적 595 이상 ◦ TEPS(만점 990점) 시험성적 498 이상, TEPS(만점 600점) 시험성적 267 이상 ◦ 영어 말하기능력 인증 취득자(경상남도교육감 인증) ◦ ESPT 일반 3급 이상(2019.3.1. 이후 실적)	0.3	택일 적용 <개정 2019.8.13.>
	6.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 이상(임용 전 자격취득 포함)	0.3	
	1. 국가유공자와 동 부양자(배우자, 직접 부양하는 자녀와 그 배 우자), 순직한 교육공무원의 배우자, 자녀와 그 배우자 2. 부모(배우자 부모 포함)를 인사 당해 학년도 말일 기준으로 1 년 이상 연속하여 직접 봉양하고 있는 자 3. 장애인(1년 이상 장애 증명 소지자) 본인 및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중 장애인(장애 증명 소지자)을 인사 당 해 학년도 말일 기준으로 1년 이상 연속하여 직접 부양하고 있는 자<개정 2011.10.24.>	1.0 0.5 1.0	택일 적용 <개정 2017.8.21.>
	4. 만 55세 이상인 교사(2022.3.1.자 전보부터 적용)	1.0	<개정 2019.8.13.> <개정 2021.8.13.>
우 우 조 건	5. 자녀가 3명 이상인 교사 6. 자녀가 2명인 교사(2022.3.1. 전보부터 적용) 7. 자녀가 1명인 교사(2026.3.1. 전보부터 적용)	1.0 0.5 0.25	5~7번 중복 불가 <개정 2017.8.21.> <개정 2021.8.13.> <개정 2024.8.12.>



<표 3>

영양교사 연도별 인사급지표 (초등) (2025.9.1. 기준)

순	학교명	영양교사 배치 수	연도별 급지					비 고
			2022	2023	2024	2025	2026	
1	가남초	1	다	다	다	다	다	
2	가양초	1	나	나	나	나	나	
3	가촌초	1	나	나	나	나	나	
4	금송초	1				나	나	2025.3.1. 개교
5	금오초	1	나	나	나	나	나	
6	대운초							미배치
7	덕계초	1	나	나	나	나	나	
8	동면초	1	나	나	나	나	나	
9	동산초	1	가	가	가	가	가	
10	물금초							미배치
11	백동초	1	다	다	다	다	다	
12	범어초	1	가	가	가	가	가	
13	북정초							미배치
14	사송초	1			나	나	나	2024.9.1. 개교
15	삼성초	1	가	가	가	가	가	
16	삽량초							미배치
17	상북초	1	다	다	다	다	다	
18	서남초	1	가	가	가	가	가	
19	서창초	1	다	다	다	다	다	
20	석산초	1	다	다	다	다	다	
21	성산초							미배치
22	소토초							미배치
23	신기초	1	가	가	가	가	가	
24	신명초							미배치
25	신양초	1	나	나	나	나	나	
26	신주초	1	나	나	나	나	나	
27	양산초	1	가	가	가	가	가	
28	양주초	1	가	가	가	가	가	
29	어곡초	1	나	나	나	나	나	
30	영천초							미배치
31	오봉초							미배치
32	용연초							미배치
33	웅상초	1	다	다	다	다	다	
34	원동초	1	다	다	다	다	다	
34-1	이천분교							미배치
35	좌삼초							미배치
36	중부초	1	나	나	나	나	나	
37	증산초							미배치
38	천성초	1	나	나	나	나	나	
39	평산초	1	나	나	나	나	나	
40	하북초	1	다	다	다	다	다	
41	화제초	1	가	가	가	가	가	
42	황산초	1	나	나	나	나	나	
43	회야초	1	나	나	나	나	나	
계		31						



<표 3>

영양교사 연도별 인사급지표 (중등) (2025.9.1. 기준)

순	학교명	영양교사 배치 수	연도별 급지					비고
			2022	2023	2024	2025	2026	
1	금송중					나	나	2025.3.1. 개교
2	금오중	1	나	나	나	나	나	
3	물금중	1	나	나	나	나	나	
4	범어중	1	가	가	가	가	가	
5	삼성중	1	가	가	가	가	가	
6	사송중	1		나	나	나	나	2023.3.1. 배치
7	서창중	1	다	다	다	다	다	
8	신주중	1	나	나	나	나	나	
9	양산중	1	가	가	가	가	가	
10	양산중앙중							미배치
11	양주중							미배치
12	웅상여중							미배치
13	웅상중	1	나	나	나	나	나	
14	월동중							미배치
15	증산중					가	가	2025.3.1. 개교
16	물금고	1	라	라	라	라	라	
17	범어고							미배치
18	서창고	1	라	라	라	라	라	
19	양산고	2	라	라	라	라	라	
20	양산남부고							미배치
21	웅상고	1	라	라	라	라	라	
22	증산고	1		라	라	라	라	2023.3.1. 배치
23	양산희망	1	다	다	다	다	다	
계		16						



【부 칙】 (2008. 12. 23. 인사위 교육과-35518호)

제1조(시행일)

이 인사관리기준은 2009년 3월 1일 자 정기 인사부터 적용 시행한다.

【부 칙】 (2009. 12. 24. 인사위 교육과-41257호)

제1조(시행일/초등)

이 인사관리기준은 2010년 3월 1일 자 정기 인사부터 적용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중등)

이 인사관리기준은 2010년 3월 1일 자 정기 인사부터 적용 · 시행한다.

<표 1> 인사 구역 및 근무연한(영양교사)

인사급지 및 구역		동일교 근무연한	급지별 근무연한
급지	인사 구역(학교)		
가	양산중앙중, 신주중, 범어중	4 년	8 년
나	양산중, 삼성중	4 년	10 년
다	양주중, 응상중, 응상여중	4 년	
라	서창중, 원동중	4 년	

【부 칙】 (2012. 1. 5. 인사위 교육지원과-229호)

제1조(시행일)

이 인사관리기준은 2012년 3월 1일 자 정기 인사부터 적용 시행한다.

【부 칙】 (2012. 12. 17. 인사위 교육지원과-41505호)

제1조(시행일)

이 인사관리기준은 2013년 3월 1일 자 정기 인사부터 적용 시행한다.

제2조(시행안 예고/중등)

이 인사관리기준은 2014년 3월 1일 자 정기 인사부터 적용 · 시행한다.

<표 1> 인사 구역 및 근무연한(영양교사)



급지	인사급지 및 구역	통일교 근무연한	급지별 근무연한
	인사 구역(학교)		
가	양산중앙중, 신주중, 범어중, 범어고, 물금고, 양산남부고	4년	8년
나	양산중, 삼성중, 양산고	4년	10년
다	양주중, 응상중, 응상여중, 응상고	4년	
라	서창중, 원동중, 서창고	4년	

【부 칙】 (2013. 12. 31. 인사위 교육지원과-23524호)

제1조(시행일)

이 인사관리기준은 2014년 3월 1일 자 정기 인사부터 적용 시행한다.

【부 칙】 (2014. 11. 27. 인사위 교육지원과-27729호)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 7. 22. 인사위 교육지원과-18958호)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준의 적용)

- ① 본 기준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경상남도교육청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기준을 준용한다.
- ② 기타 인사 관련 현안은 지원청 인사협의회를 통하여 결정한다.

제3조

본 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2016 경상남도교육청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기준을 준용한다.

【부 칙】 (2016. 8. 16. 인사위 교육지원과-21761호)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7년 3월 1일 자 정기 인사부터 적용 · 시행한다.

제2조

본 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2017 경상남도교육청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기준을 준용한다.



【부 칙】 (2017. 8. 21. 인사위 교육지원과-18116호)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8년 3월 1일 자 정기 인사부터 적용 · 시행한다.

제2조

본 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2018 경상남도교육청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기준을 준용한다.

【부 칙】 (2018. 8. 13. 인사위 교육지원과-11125호)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9년 3월 1일 자 정기 인사부터 적용 · 시행한다.

제2조

본 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2019 경상남도교육청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기준을 준용한다.

【부 칙】 (2019. 8. 13. 인사위 교육지원과-11430호)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20년 3월 1일 자 정기 인사부터 적용 · 시행한다.

제2조

본 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2020 경상남도교육청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기준을 준용한다.

【부 칙】 (2020. 8. 14. 인사위 교육지원과-11338호)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21년 3월 1일 자 정기 인사부터 적용 · 시행한다.

제2조

본 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2021 경상남도교육청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기준을 준용한다.

【부 칙】 (2021. 8. 13. 인사위 교육지원과-12637호)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22년 3월 1일 자 정기 인사부터 적용 · 시행한다.



제2조

본 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2022 경상남도교육청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기준을 준용한다.

【부 칙】 (2022. 8. 17. 인사위 교육지원과-14073호)

제1조(시행일)

이 인사관리기준은 2023년 3월 1일자 정기 인사부터 적용·시행한다.

제2조

본 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2023 경상남도교육청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기준을 준용한다.

【부 칙】 (2023. 8. 21. 인사위원회 교육지원과-14195)

제1조 (시행일)

이 인사관리기준은 2024.3.1.자 정기 인사부터 적용·시행한다.

제2조 (시행 예고)

제1장 제5조 (인사 구역 및 근속 연한)은 중 『증산고등학교 급지를 『라』 급지로 한다.』는 내용을 신설한다.

제3조

본 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2024 경상남도교육청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기준을 준용한다.

【부 칙】 (2024. 8. 20. 인사위원회 교육지원과-14148)

제1조 (시행일)

이 인사관리기준은 2025.3.1.자 정기 인사부터 적용·시행한다.

제2조 (시행 예고)

제1장 제5조(인사 구역 및 근속연한)는 아래와 같이 개정한다.

<표 1> 인사 구역 및 근속 연한

인사 지역	급지 (점)	대상학교				근속연한	
		초	중	고	특수	동일교	지역
양산시 (동)	가(6점)	신기초, 양주초 양산초, 삼성초	양산중, 삼성중			4년 (2식)	10년



	나(7점)	어곡초, 중부초 신양초, 천성초 평산초, 덕계초 회야초	웅상중			3식 학교: 2년)
	다(8점)	웅상초, 백동초 서창초	서창중			
	라(9점)			서창고(2) 양산고(3) 2명 웅상고(2)		
	소계	14개교	4개교	3개교		
양산시 (읍/면)	가(6점)	범어초, 동산초 서남초, 화제초	범어중, 증산중			4년 (2식, 3식 학교: 2년) 12년
	나(7점)	신주초, 황산초 가양초, 가촌초 금오초, 동면초 사송초, 금송초	신주중, 물금중 금오중, 사송중 금송중			
	다(8점)	상북초, 가남초 하북초, 월동초 석산초			양산 희망	
	라(9점)			물금고(2) 증산고(2)		
	소계	17개교	7개교	2개교	1개교	
	합계	31개교	11개교	3개교	1개교	
비고	◦ 본 기준 시행 이전의 학교 급지는 급지 조정 이전의 기준에 의한다.					

제3조

본 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2025 경상남도교육청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기준을 준용한다.

【부 칙】 (2025. 8. 12. 인사위원회 교육지원과-14764호)

제1조 (시행일)

이 인사관리기준은 2026.3.1.자 정기 인사부터 적용·시행한다.

제2조 (시행 예고)

제1장 제5조(인사구역 및 근속연한) ②항은 아래와 같이 개정한다.

② 1일 2식 및 3식을 급식하는 학교의 근무연한은 4년으로 한다.(2028.3.1.전보부터 적용)

2026.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기준 유치원/초등학교

■ 발행일 : 2025년 10월 인쇄

■ 발행인 : 최은지 / 양산교육지원청교육장

■ 발행처 : 양산교육지원청



경상남도 양산시 물금읍 청룡로 53